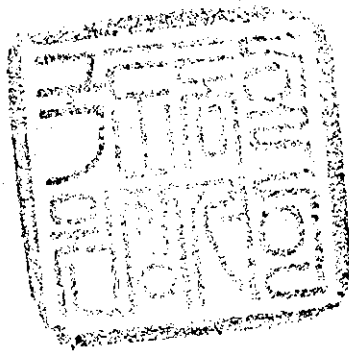


# 백두산 및 간도지역의 영유권 문제



1969. 8



목                    차

서 언 .....	1
제 1 편 백두산정계비와 백두산 귀속문제 .....	3
제 1 장 백두산에 대한 한·중의 인식 .....	3
제 1 절 백두산과 한국 .....	3
1. 개국사상 .....	3
2. 백두산에 대한 인식 .....	4
제 2 절 백두산과 중국 .....	6
제 2 장 한·중의 국경선과 무인지대의 설치 .....	7
제 1 절 한·중 간의 옛 국경 .....	7
제 2 절 무인지대의 설정과 그 범위 .....	8
제 3 절 무인지대 (완충지대) 의 유지와 범월자처벌 .....	11
제 3 장 정계비의 설립과 백두산귀속문제 .....	15
제 1 절 중국의 백두산답사 .....	15
제 2 절 정계비의 설립 .....	16
제 3 절 석좌·목책 및 土墩의 설치 .....	20
제 4 장 정계비 설립후의 백두산 및 완충지대 처리 .....	22
제 1 절 완충지대의 존중 .....	22
제 2 절 완충지대 및 백두산의 귀속문제 .....	24

제 2 편 백두산정계비와 간도귀속문제	27
제 1 장 지리적 고찰	27
제 1 절 간도와 한국	27
제 2 절 간도의 명칭	28
제 3 절 간도의 범위	31
제 2 장 경제적 고찰	33
제 1 절 한국의 완충지대에의 이민公認	33
제 2 절 간도지방에의 한국인 이주 및 경작	37
제 3 장 간도귀속문제의 발단	41
제 1 절 어운중의 문제제기	41
제 2 절 한국정부의 주장	42
제 3 절 을유勘界 담판	44
제 4 절 정해감제 담판	49
제 4 장 간도에 있어서 한·중의 경쟁적 행정조치	52
제 1 절 중국의 조치	52
제 2 절 한국의 조치	53
제 5 장 간도협약의 체결	57
제 1 절 일본의 간도문제개입	57
제 2 절 일·중 양국의 주장	58
1. 일본의 주장	58
2. 중국의 주장	62
제 3 절 간도협약의 체결	68
제 6 장 국제법적 고찰	72

제 1 절	간도협약의 불법성문제	72
제 2 절	간도협약의 무효	75
	1. 카이로선언 및 포츠담선언에의 위반	75
	2. 산·프란시스코평화조약과 중·일평화조약에의 위반	76
제 3 절	土門江 선과 맥마혼선의 비교	78
제 4 절	간도귀속문제와 분쟁의 再起 문제	80
제 5 절	백두산정계비의 합법성문제	81
제 6 절	간도의 국제법적지위	83
결 어		85
부 도	1. 백두산 부근도	89
	2. 한·중의 옛 국경도	90



## 서 론

중공은 북괴에 대하여 백두산 동쪽에 접한 250 km의 땅을 할양하도록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고 도하신문들은 보도하고 있다.<sup>(1)</sup>

이 보도는 영국의 「선데이 타임즈」의 보도를 일본의 「NHK」 방송이 1969년 5월 25일에 인용함으로써 전파된 것이다.

이 뿐만 아니라 중공과 북괴간에는 한국이 독립하던 1948년부터 백두산 영유문제로 의견의 차이를 보여 왔다.

백두산을 중심한 국경분쟁은 1965년에 있었으며 1968년 12월과 1969년 3월에도 제기되어 총격전까지 벌어진 바 있다.<sup>(2)</sup> 중공의 지도는 백두산 전부를 중국소유로 표시하고 있으며 한편 북괴의 지도는 국경선이 백두산 산정으로 통과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sup>(3)</sup>

이와 같이 중공과 북괴간에는 백두산을 중심한 영토분쟁이 계속적으로 야기되고 있다. 이 중공과 북괴간의 국경분쟁을 두고 일부 해석은 ①중공이 6·25 참전대가로서 요구하고 있다는 설과

---

(1) 조선일보 1969.5.27

대한일보 1969.5.27

동아일보 1969.5.27

(2) 대한일보 1969.5.27 사설 및 총결하는 중공·북괴

조선일보 1969.5.27 중공, 백두산할양 강요

(3) Guy Searls, Communist China's Board Policy: Dragon Throne Imperialism? Current Scene (Hong Kong), Vol. 2, No.12, 1962, P.17.

Harold C. Hinton, Communist China in World Politics, 1966, P.488.

②백두산지역은 북괴의 이른 바 방위제 3단계선의 마지막 부분이며 북괴의 극비 군사시설이 충만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소련의 단거리 「미사일·로켓」 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중공과 북괴간의 정치적 분쟁이라는 설과 ③압록강물의 침식작용에 따라 생기는 사주의 모래로 인한 분쟁이라는 설 및 ④이미 새로운 국경정책이 북괴·중공간에 정식으로 이루어졌을 것이며 최근의 분쟁보다는 하나의 「애드바툼」이라는 설이 있다.

그러나 백두산의 영유권에 관하여서는 그렇게 간단히 말해 넘길 수 없는 심각한 문제가 내포되어 있고 동시에 백두산과 관련된 간도지역의 영유권 문제가 있는 것이다.

이 글은, 비단 백두산을 중심으로 압록강 및 두만강상의 모래 분쟁만이 아니라 한중간에 장구한 세월을 두고 논쟁의 대상이 되어 왔던 백두산과 간도지역의 영유권문제 전반에 관하여 명백히 규명함으로써 백두산 및 간도지역이 한국영토라는 것을 이 시점에서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엄숙히 대외적으로 선언을 하도록 하는데 자료로 삼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다.



## 제 1 편 백두산정계비와 백두산 귀속문제

### 제 1 장 백두산에 대한 한·중의 인식

#### 제 1 절 백두산과 한국

##### 1. 개국사상

우리 한국인은 백두산과의 인연을 멀리 단군으로부터 구한다. 古朝鮮記와 삼국유사에 하느님의 아들인 환웅이 태백산(지금의 백두산) 단목하에 내려 단군을 출산하였고 단군이 한국을 다스렸다고 하고 있다.

단군과 태백산을 연관시킨 고서는 많이 있다.

삼국유사 고조선조에 보면 고기(古記)를 인용하여 「下視三危太伯」 또는 「雄 降於太伯山頂神檀樹下」라고 하였다.

세종실록 지리지 평양부조에 「檀君古記云……雄……降太伯山神檀樹下」라고 했고 권마응제시주에도 「古記云……雄……降於太伯山神檀樹下」라고 하고 있다.<sup>(4)</sup>

이 태백산이 지금의 백두산인 것은 사가(史家)가 증명하는 바

---

(4) 정인보 저, 조선사연구(상)

1946, 서울신문사, pp. 39-40.

이다.<sup>(5)</sup>

삼국사기에는 「高句麗殘孽 北依太伯山下 國號渤海」라 했고 통고에는 「武后時 靺鞨乞四比羽及高句麗余種 東走溟遼水 保太伯山之東北 阻奧婁河」<sup>(7)</sup>라 했다. 그리고 성경통지에는 「長白山 卽 歌爾民商 堅阿隣 山海經不咸山 唐書 作太白山 亦曰徒太山 或作白山」<sup>(8)</sup>이라 하였는데 만주어로 가이민(歌爾民)은 「長」의 뜻이고 상견(商堅)은 「白」이고 아린(阿隣)은 「山」의 뜻이라고 한다.<sup>(9)</sup>

이와 같이 태백산은 한국의 개국사상과 결부되는 산이므로 우리 4천만 국민의 뇌리에 깊이 뿌리 박혀 있고 이 태백산은 오늘의 백두산이란 것이 증명되고 있다.

## 2. 백두산에 대한 인식

이씨조선의 영조는 1731년에 각의에서 백두산을 「종산」(宗

---

(5) 정인보 저, 전계서 pp.39-40.

신채호 저, 조선상고사 1948, 종노서관, p.38

단군의 왕경중 ①은 지금의 할빈 ②는 안시성 ③은 지금의 평양으로 보는 것이다.

(6) 김부식 저, 삼국사기, 최치원전 태사장

(7) 승정원 편, 통고 상 발해조

(8) 성경통지 산천조

(9) 정약용 저 장지연 증보) 조선강역지 권 8, 昭和 3, 교학당인쇄소 p.11.

정인보 저, 전계서 p.40

山) 으로 규정하고 국조발상지로서 제사를 지내기로 결의하였다.  
그리고 감산부에서 80 리 떨어진 운봉의 북쪽에 있는 망덕평에  
각당을 지어 백두산을 향해 제사를 지냈다.(10)

1903년(광무7년)에는 국내 5악을 지정하였는데 그 때 백두산  
을 북악으로 정하고 제사를 지냈다.(11)

이와 같이 백두산은 우리 한국이 개국한 근원지다. 거룩한 뜻  
을 가진 이 산에 대하여 신성함을 유지하고 기리 민족의 정신에  
간직하기 위하여 제사를 지내 왔는데 오늘날에도 우리가 가장 근  
엄하게 부르는 국가의 첫구절에 이 백두산을 민족과 더불어 생존  
해 나갈 것을 명시하고 있다. 즉 「동해불과 백두산이 마르고  
않도록」 하는 것이 그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백두산을 한국의 조종산(朝宗  
山) 또는 진산(鎭山)으로 생각하여 왔다. 백두산은 한국의 상  
징이요 수호신이다. 그러므로 백두산은 한국의 불가분의 영역이며  
어느 나라도 이의 영유를 주장할 수 없다.

---

(10) 서명용 등저, 국조보감, 영조정해추 7월조

(11) 정약용저, 전계서 P.11

## 제 2 절 백두산과 중국

중국은 고기에 백산혹수란 용어를 쓰고 중국의 영역은 백산(백두산) 및 혹수(혹용강)에 까지 미친다는 뜻을 나타내고 있는데 성경통지에 의하면 「백산에는 초목이 모두 희다고 하더라」 또는 「백산에 가는 자는 모두 부자가 되어 온다더라」 하는 식으로 기록하여 사실과 다른 막연한 표현들을 하고 있다. 이 시대의 중국인들은 그러한 백두산 또는 혹용강이 있는 줄만 알고 있었던 모양이다.

청국은 백두산과 연관되는 인연을 가지고 있다. 만주실록에 보면 다음과 같은 창조발상의 전설을 갖고 있다. 즉, 장백산의 동방에 포고이산이 있고 그 산 아래에 포록호리탄 못이 있었다. 이 못에 천녀 3자매가 목욕을 하다가 맨 끝의 천녀가 까치가 놓고 간 주과를 삼켜 잉태하여 아이를 낳았는데 이 아이가 애친각라였으며 애친각라가 백두산 동쪽에 있는 아내리성에서 주변의 지역을 다스려 국호를 만주라고 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다.(12)

중국의 청조는 이러한 전설을 꾸며 청조 자체의 개국사상으로 삼았고 이 백두산에 대하여 한동안(강희조 이래) 영유권을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오늘 날에 와서 중국은 백두산에 대하여 그 영토의 일부라고 생각하고 있는 듯 하나 한국처럼 백두산을 국가의 상징으로 또는 수호신으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다.

---

(12) 만주실록개권 제 1

로계현저, 한국외교사연구, 1967, 해문사, PP.185-186.

## 제 2 장 한·중의 국경과 무인지대 (완충지)의 설치

### 제 1 절 한·중간의 옛 국경

정묘호란의 결과 한·청간에는 1627년(인조 5)에 소위 강도회맹이란 한 조약을 체결하였다. 이 조약에는 「我兩國 已講和好 今後兩國 各遵約誓 各全封疆……」이라고 규정하였다. 그리고 동년에 한국이 청국에 회답한 글 가운데 「……우리 나라의 지방은 우리 스스로 살며 지키고……영토를 굳게 할 것이다. 염려를 귀국에 끼치게 하지는 않을 것이다」<sup>(13)</sup>고 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봉강이 어느 지역인가 하는 것을 다음 몇 증거로서 추적할 수 있다.

1638년(인조 16년, 청송덕 3년)에 청태종은 압록강 하류에 있는 람반에서 봉황성을 거쳐 홍경·회인(驛場邊門)에 이르는 곳에 대대적인 국경시설공사를 행하였다. 이 시설공사는 옛 국경선보다 50리나 동쪽으로 이동해서 쌓은 강책이었다.<sup>(14)</sup> 그리고 불인 Du Halde는 중국지(Description de la China)란 그의 저서에 이 지방의 지도를 게재하고 있다. 이 지도에 의하면 두만강 밖

---

(13) 춘추관 편, 인조실록, 인조 5년 7월 16일 조

(14) 稻葉岩吉 저, 만주발달사, p.319.

篠田治策 저, 백두산정세비, p.22.

武見芳二 논문, 동변도 세계지리 제1권 만주, p.276.

의 목돈을 포함하여 흑산산맥에서 보타산을 지나 압록강 상류에 들어가는 두도구 및 12도구에 이르는 諸水系와 송화강의 서쪽 원류들과의 분수령인 백두산과, 그 지맥에서 혼강본류의 서쪽을 거쳐 대소고하의 수원에서 압록강과 봉황성의 중간의 위치에 점선을 거쳐 놓고 이를 설명하기를 「……봉황성의 동쪽에는 조선국의 서쪽 국경이 있다」<sup>(15)</sup> 고 하였다

청국은 이 시대의 국경을 압록강과 두만강으로 한 것이 아니다. 압록강 하류에서 봉황산을 잇는 선인 長柵과 흑산산맥이 그 당시의 국경선이었던 것이 명백하다. 따라서 압록강과 두만강이 우리 역사상 결코 우리의 국경선으로 되어 본적이 없었다. 압록강과 두만강을 우리 조상들은 뗏목과 어름판을 이용하여 자유로히 넘나들었고 누구도 말리는 사람이 없어 마치 국내 하천을 건너듯이 통과하였던 것이다.

## 제 2 절 무인지대의 설정과 그 범위

한·청간에는 개국의 성역인 백두산 주변에 속된 인간들의 발자취를 남길 수 없다하여 봉금지역 (무인지대) 을 설정하여 범월을 금지하였는데 그 범위 <sup>(16)</sup> 는 이 장책과 압록강 사이와 흑산산맥과

(15) Du Halde는 강희제의 초청으로 청국에 와서 (1709~1716) 중국을 측량하여 황여전람도를 작성한 Regis로 부터 이 고도를 받아 「단빌의 지나도」를 작성하였다. 그리고 그의 저서에 Regis가 실제로 측량한대로 한·청 국경선을 게재한 것이다.

(16) 이 내용은 篠田治策, 전계서, P. 18과 稻葉岩吉, 전계서, P. 131에도 인용되고 있다.  
武見芳二, 전계론문에도 동일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송정원 편, 同文彙考, 訓戎鎮 越辺房屋事

두만강 사이로 규정하였다. 즉 Du Halde는 그의 전기 저서에서 「.....만주는 명을 공격하기 전에 조선과 싸워 이를 정복하였으나 그 때 장채파 조선과의 국경간에는 무인의 지대를 설치키로 의정하였다. 이 조선 국경은 도상 점선으로써 표시한 것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그 당시의 한국의 경계는 압록강이 아니라 압록강과 봉황성의 중간지대인 것이다. 이것을 뒷받침 할만한 충분한 자료가 우리 기록에도 남아 있다.

1731년에 중국은 개우초에 수로초소 공사를 하려고 한국에 통고해 왔다. 이 개우초는 봉황성 부근이며 초하와 원하가 합류하는 곳이며 한·청 봉금지역의 중간 지점이다. 이러한 지리적 이점을 이용하여 도적들이 작은 배로써 쌀 밀수를 행하고 있었으므로 수로를 감시하려 한 것이다. 이에 英祖는 김경문을 중국에 파견하여 이 공사를 못 하게 하는 동시에 회답서를 보냈다.

이 회답서의 내용은 「옛날 태종문황제(필자 주 청태종)는 이 봉강을 준수하고 속국을 구휼하여 실책을 한 후에 경계를 많이 버려 사람의 접촉을 허락하지 않았다.....고려나 두강이 합류하는 지점(필자 주 개우초)은 곧 우리나라의 경계지역이므로 우리 변민 중에 성격이 거칠은 자가 이 지역을 이용하여 어떠한 사건을 일으킬지 모른다. 지금 만약 수로초소를 가까운 지점인 개우초에 설립하고 중강시장은 또한 그 근처에 개설한다면 여러가지 폐단이

생기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17) 라는 것이다.

이 항의에 의하면 청태종시대에 실책공사를 하여 이 장책과 압록강 사이의 넓은 지역을 성역으로 하였기 때문에 국경은 상접하지 않았다.

그 뿐만 아니라 1662년에 현종왕은 변지의 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각의를 개최하였는데 영의정 정내화가 「마땅히 압록강으로써 경계로 하자」고 하였으나 현종왕은 「압록강으로써 경계로 하던 우리 땅이 청국에 귀속된다. 애석하지 않은가」(18) 라고 하였다.

그리고 동지사 강선이 숙종왕에게 올린 건의서 내용에 「사절입거시에……앞으로 의주에서 책문에 이르기까지는 일행의 역원 및 의주장교·북타의 류를 참작, 분장케 하든지 또는 별도로 差員을 정하여 전송시켜 책문에서 심양에 이르기까지는 雇車로서 수송하고 駝人은 책문 밖에서 퇴송시키든지 하면 좋겠다」고 하고 있다.(19)이것은 압록강과 책문사이의 청국의 영토가 아닐 뿐더러 정부간의 공식적인 행사에 있어서도 완충지대적 용지로서 사용하자는 뜻이다.

한·청간의 강도회맹중에 「各全封疆」이란 뜻이 대단히 막연하기

---

(17) 실록청 편, 영조실록 권 29, 영조 7년신해 6월 20일, 23일조  
비변사등록, 영조 7년신해 6월 20, 23일조

승정원 편, 승정원일기, 영조 7년신해 6월 20, 23일조,

(18) 실록청 편, 현종실록, 현종 3년 5월 17일조

(19) 실록청 편, 숙종실록, 숙종 26년 3월 20일조



한 가지마는 한국은 압록강과 두만강을 넘지 않을 것을 약속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고 청국은 책문 밖을 넘지 않을 것으로 약속한 것이 명백하다. 이렇게 하여 압록강 및 두만강과 책문 사이가 오로지 무인지대 또는 완충지대가 된 것이다. (20) 즉 양국간에 완충지대 또는 무인지대를 설정하여 직접적 충돌을 방지 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기록들은 Du Halde의 무인지대론과 더욱 접근하여 양국간의 완충지대설을 명백히 하는 것이다.

### 제 3 절 완충지대의 유지와 범월자 처벌

양국간에는 이 완충지대로서의 무인지대가 상당히 오래도록 계속 되었으나 간혹 두 나라 국민중에 수렵, 採蔘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범월자가 생겨나게 되었다. 두나라 정부는 철저히 완충지대로서 이 지역을 유지하기 위하여 이들 범월자를 추방 또는 소환하였던 것이다. 여기에 그 중요한 실례를 몇가지 들어 보면 다음과 같다.

---

(20) 청국은 이 지역내의 여진족 및 기타 토족을 <sup>1578</sup>~~1583~~년부터 1643년에 이르기까지 招撫捕獲 징집하였는데 많은 여진족이 청국으로 갔으며 이에 불응하는 자는 한국, 시베리아 등지로 피난하여 이 지역에는 완전히 무인지대가 되었다.

위원에 있는 추구비와 벽권의 거주인이 강을 건너 채산하다가 청국에 체포된 자가 36명이나 되었다. 청국으로 부터 완충지대로 규정한 조약을 준수하지 못하였다고 항의를 받은 한국은 위원군수 허상, 첨사 이현기 및 만호 김진 등을 직무 나태죄로 구속하여 사형에 처하였다. (21)

외주부윤 이시술이 뒷사람에게 압록강을 건너가서 벌목하도록 허가 해준 사실이 있는데 이들이 벌목하다 청국 관리에게 발각되었다. 이 사건을 두고 청국이 항의할 때 현종왕은 「물래 넘어가서 경작하는 자가 있지마는 이것은 일조일식에 일어난 사건이 아니다」고 하였다. (22)

강계부민인 하득명등 30여명이 압록강을 건너 갔다가 한국관리에게 발각되어 사형 또는 유배를 당하였고 만포첨사 윤창형은 직무태만으로 파면 당하였다. (23)

현종왕 13년에는 압록강 방면의 범월자 처벌법을 제정하였는데 그 요지는 주모자는 사형에 처하고 추종자는 업형 3차, 제범자는 업형 5차 그리고 3범자는 사형키로 하였다. (24) 이것은 범월을 막아 완충지대를 유지하기 위한 한국정부의 단호한 조치였다.

북도어사 이우겸이 삼수에서 채산을 위한 범월자 30여인을 체포하였으나 이들이 모두 도망을 쳤기 때문에 하는 수 없이 석방조

---

(21) 실록청 편, 인조실록, 인조 13년 11월 20일조

(22) 실록청 편, 현종실록, 현종 3년 5월 16일조

(23) 현종실록, 현종 11년 9월 25일조

(24) 현종실록, 현종 13년정월 25일조

치를 취하였다. 그랬더니 이들이 스스로 모여와서 울며 호소하기를 이 지방민의 생명은 단지 探獵에 달려 있을 뿐이다. 아무리 엄벌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먹고 살기 위하여 내년에 또 강을 건너가서 채삼하지 않으면 안되며 정부가 강의 출입을 허가하지 않으면 삼수 감산은 폐지가 될 것이라고 하였다.

이 말을 들은 한국정부는 금지조치를 풀 수도 없고 그대로 계속할 수도 없는 난처한 처지였다. 그러나 숙종왕은 이들의 정상을 참작하여 선처하도록 명령하였다. (24)

위원인 몇 사람이 범월하여 온 청나라 사람 5명을 살해하고 그들이 채취한 산삼을 빼앗아 온 사건이 일어났다. 이 때 청인 가운데 1인이 간신히 도망하여 20여인의 청인을 위원군의 북문 밖에 다리고 와서 항의하였고 순라장교 고여강을 잡아 인질로 하였다.

이 사건을 위원군수 이후설은 상부에 보고하지 않고 있다가 탄로가 났으므로 한국정부는 역관 김홍사를 청국에 보내서 경위를 설명하고 사과하였다. (25)

청인도 이 완충지대에 들어와서 범월행위를 하게 되었고 이에 대하여 정부에서는 항의를 하게 되었다. 즉 안복어사 정식이 서관에서 돌아와 강변의 사정을 보고한 가운데 「청인의 探獵은 반드시 강을 따라 막을 지어 한국인과 접근하니……무식한 변민이

---

(24) 숙종실록, 숙종 19년 12월 26일조

(25) 숙종실록, 숙종 36년 11월 9일, 26일조

이익을 보고 죽음을 불사하여 불불교환을 하고 있다」고 하였다.  
정부는 이 청인의 철퇴를 청국에 요구하였고 따라서 청국은 이들을 소환해 갔다. (26)

---

(26) 숙종실록, 숙종 37년 3월 13일조  
승정원편, 동문휘고 용정 9년 6월 23일조 및 9월 14일조

### 제 3 장 정제비의 설립과 백두산 귀속문제

#### 제 1 절 중국의 백두산답사

청국의 강희제는 백두산에 한국인이 내왕한다는 정보를 듣고 백두산을 그 판도내에 편입하려고 하였다. 그 구체적인 조치는 대청일통지를 편찬하려 할 때 지리가 불명하여 애매했던 발상지방을 확인하려는 생각으로 백두산을 답사한데 찾아 볼 수 있다.

즉 강희제는 1677년에 무목놀이 하여금 백두산의 위치와 통로를 조사케 하였다. 무목놀은 6월 2일에 출발하여 지금의 휘발하 방면에서 백두산정까지 조사하고 8월 21일에 돌아 갔다.(27)

청국은 또 다시 무목놀을 백두산에 보내어 제사를 지내게 하였으며 백두산을 봉하여 매년 망제를 규정에 따라 지냈다.

청국은 1684년(강희 23)에 능출로 하여금 백두산을 또다시 답사케 하여 그 지역의 지리를 명백히 알려고 하였다. 즉 능출은 압록강 방면에서 백두산을 답사해 오르다가 한국인 한득완 등의 저격을 받아 답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말았다.(28)

---

(27) 숙종실록, 숙종 6년 2월 22일

길림통지 권 1, 팔기통지 권 285, 무목놀소주

(28) 성경통지 권 1, 숙종실록, 숙종 16년

비변사편, 비변사등록, 숙종 10년

김지남저, 통문관지, 숙종 16년

그 후에 청국은 1711년 (강희 50) 에, 穆克登으로 하여금 백두산을 답사하고 국경을 정하도록 일방적인 조치를 취하였다. 이 때 강희제가 하달한 훈령은 「……土門江은 장백산 (필자주: 백두산) 으로부터 발원하여 동남에 향하여 흘러서 바다로 들어 간다. 그 서남은 조선이고 동북은 중국이다」고 되어 있었다.

이것은 청국이 80여년간이나 지켜 오던 완충지대 전부와 백두산을 한국과 아무런 상의도 없이 일방적인 선언에 의하여 편입조치를 취하려 하였던 것이다.

## 제 2 절 정제비의 설립

백두산을 조사하라고 명령을 받은 목극등 일행은 1712년 5월 4일에 惠山에 이르러 5일에 한국대표 박권과 회견하였다. 목극등은 6일에 필첩식 소이창, 대통관 이가, 가정 20인, 우마 40~50필, 인부 43인과 한국대표 朴權 이선부, 군관 이의복, 순찰사군관 조대상, 거산찰방 허량, 라난만호 박도상, 역관 김응헌, 김경문, 도자 3인, 부수 10인, 말 41필 및 인부 47인과 동도하여 백두산을 향해 올라 갔다.

도중에서 산이 험해지기 시작하니 목극등은 연로한 한국대표 박권과 이선부는 올라갈 수 없다 하여 동행하지 못하도록 하여 동행을 거절하였다. (28')

---

(28') 백산학회간, 백산학보 제 6호, 1969, 접반사청해행백산첩, p. 185

동월 11일에 드디어 백두산에 올라갔는데 목극등은 백두산을 청국영토로 편입시키라는 훈령에 따라 산정을 국경선으로 하려고 하지 않고 한국 쪽으로 내려오면서 어느 지점을 택해 국경지점으로 하려고 하였다.

백두산에서 남쪽으로 3 - 4리 내려와서 압록강쪽인 오른편의 수원을 하나 발견하였고 토문강 쪽인 왼편의 수원을 또하나 발견하였다. 이 왼편 수원은 서쪽으로 30 - 40보 흐르다가 두갈래로 나누어지고 그 일과는 흘러 서쪽 냇물과 합하고 일과는 동쪽으로 흘렀다. 이 물은 좁게 흐르며 한 언덕을 넘으면 또한 냇물이 있는데 동쪽으로 100보쯤 이르러서 중간 수계와 갈라져서 동쪽으로 흐르든 것이 이곳으로 와서 합류함을 발견하였다.

목극등은 분수령상에 앉아서 역관 김경문에게 말하기를 여기를 분수령이라 명명하고 이곳에 비를 세워서 국경으로 정하겠다고 하였다. 마침 그 자리에 호랑이 등 처럼 노출된 바위가 하나 있었는데 목극등은 다시 말하기를 이 산에 이 돌이 있는 것은 기이한 일이다. 이 돌로서 비석의 臺石으로 하겠다. 그러면 한국이 많은 땅을 얻게 되는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목극등은 토문강의 원류가 30리 가량 흐르다가 지중으로 잠행하여 경계가 분명하지 않은 점을 발견하여 안내인 김애순을 선두로 하여 김응현, 조대상을 보내 水系를 살피 보게 하였다. 이들은 60여리나 심사하고 돌아와서 물은 동쪽으로 계속적으로 흐름을 보고했다. 그래서 목극등은 돌을 깎아 그 자리에 백두산

경계비를 세웠으니 그 비문은 다음과 같다. (29)

通官		差使官	朝鮮軍官	筆帖式	康熙五十年十月十五日	石爲記	爲土門故於分水嶺上勒	旨查邇至此審視	烏喇總官穆克登奉
金心濂	樑	許樑	李義復	蘇爾昌	通官二哥		西爲鴨綠東		
金慶門		朴道常	趙台相						

- (29) 동문취고 원편, 권 18, 점반사청해행백산첩, 칙사회첩, 사정계표, pp. 746-747  
 통문판지 권 9, 숙종 39년 5월 15일 조  
 작자미상 북로기략원 pp. 17-18  
 숙종실록 숙종 38년 5월 15일, 5월 23일 조  
 장지연 찬, 백두산정계비고  
 백산학회 편, 백산학보 제 1호, 1966, 대한공론사, pp. 215-231  
 신경준 저, 여암전서 권 7 강역고사 신조선사간, 1939, p. 58  
 정약용 저, 조선강역지 권 9 昭 3 교학당 p. 1  
 김노규 저, 북여요선 백두도본고 pp. 85-86  
 정약용 저, 문헌비고 권 36 강역고



이 정계비문에 적은 「東爲土門 西爲鴨綠」이란 규정으로 서쪽은 압록강이 국경선으로 확정되었고 동쪽은 토문강이 국경선으로 확정되었다. 따라서 압록강과 봉황성 사이의 완충지대와 백두산이 청국에 귀속되었다. 다만 두만강 건너편의 완충지대는 한국으로 귀속되었던 것이다. 환언하면 이 백두산 정계비는 한·중 두나라 사이에서 체결된 최초의 조약이며 이 조약은 두 나라 사이의 애매한 국경선을 최초로 책정한 중대한 의의를 갖는 것이다. 비록 한국이 압록강 건너편의 광활한 완충지대와 백두산을 영역 밖으로 규정했다 할지라도 이 비문 즉 조약은 한중 두 나라를 구속하는 것이다.

이 정계비로 인하여 한국영토의 광범한 지역을 상실한데 대하여 김준은 종성원수대비각기에 「불영이 봉지하여……불함(뫼자주: 백두산)의 산정에 올라 선춘오라의 경계를 바라보니 운회과 양관의 발이 물태가 천리라. 시전에 이르기를 소공은 日隣國百里라 하더니 지금 우리나라는 日隣國百里라……정계시에 순간 이하는 청병하여 산에 오르지 아니하고 장교 몇 사람만 가게 하니……강개출석하야」 심신이 불안하다 하였다. 이 당시의 한국 임금인 숙종은 백두산도의 어제시에 「向時爭界慮가 從此尽消磨」라 하여 개탄하였다. (30)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밝혀 둘 사실이 있다. 즉 목극등과 한국판리 사이에 세운 이 비문의 동위토문이라고 한 이 토문강은

---

(30) 정약용저 조선강역지 권9 p.3

豆滿江 또는 囟們江이 아니라 실제로 존재하는 土門江이며 이 토문강은 송화강의 한 상류인 것이다. 그러므로 이 土門江은 송화강으로 흘러 들어가서 만주 중간을 횡류하고 있는 것이다.

### 제 3 절 石堆·목책 및 土墩의 설치

목극등은 국경을 정한 후 무산으로 내려와서 거기서 다시 한국 대표와 만나 입비의 경위를 설명한 후 「토문강은 수원에서 심자해 보니 수십리를 흐르다가 불이 없다. 백리를 내려가서 비로소 암류는 다시 큰 강이 되어 무산으로 흐른다. 양안에 풀도 없고 땅이 평평하니 민인들이 경계가 있는 줄 모르고 내왕할 가능성이 있으니…… 불 없는 곳에는 경고한 것을 설립하여 사람들에게 경계를 알리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31)고 제안하였다.

이에 한국대표 박권은 「……각하가 설책을 하는 문제에 관하여 제의하였는데 본관은 목책은 장구지책이 아니므로 토퇴를 쌓든지 석돈을 쌓든지 둘과 흠이 없는 곳은 목책을 설치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며 공사는 농한기에 시작할 것과 청국관리의 감독여부문제에 대해서 문의한 바 있다. 이에 대하여 각하는 이미 정계가 된 후이니 공사에 청국이 감독할 필요는 없으며 공사는 또한 금

(31) 숙종실록 숙종 38년 6월 3일, 7월 20일, 10월 10일 조

동문회고 원편 권 48 칙사문의입책편부자 p.744

설책편의정문 p.745

서회동저 동삼성기략 p.21

통문관지 숙종 38년임진

홍세태저 백두산기 pp.13-14

백산학회간 백산학보 제 6호 p.186

한 것이 아니므로 1-2년 걸려 완성해도 좋으니 농한기를 이용하도록 하였으니 공사전행 과정은 매년 오는 중국사절편으로 전달하겠다」(32)고 회답하였다.

한국은 당년 겨울에 박도상 허량등으로 하여금 인부들을 다리고 가서 설책공사를 하게 하였다. 이 공사를 하는 도중에 정제비 밑의 토문강은 두만강 상류가 아니라 송화강의 상류임이 명백히 들어 났다. 이 설책공사를 시찰하던 홍치중의 보고를 함경 감사 이선부가 숙종에게 상소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금 강원이 과연 誤認된 것을 알았는데도 청국대표가 정한 것이라고 해서 이 강에 설편한다면 하류가 저편 땅에 들어가서 어디로 흐르는지 모르는 형편인즉 경계의 결정을 다시 의거할 데가 없으니 후일에 난처한 경우가 생길 것이다. 그래서 여러 사람에게 상의하기를 이미 정해진 강원은 자의로 변경할 수가 없으니 하류가 어디로 갔거나 단류처 이상은 設標之中에 있어야 할 것이다. 먼저 立碑處로부터 공사를 착수하여 위에서 부터 나무가 없고 돌이 있는 곳은 석퇴를 쌓고 돌이 없고 나무가 있는 곳은 목책을 설치할 것이며 이 공사는 졸속하게 하는 것 보다 견고하게 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하니 모두 옳다고 하더라」는 것이었다.(33)

이 사실이 정부에 보고되자 각의에서는 「목극등 대표가 정한 강이 비록 북쪽으로 흐른다 하더라도 이로써 국경으로 합이 마땅하다」는 결론을 내었다.(34)

(32) (29)와 동일

(33) 숙종실록 숙종 38년 12월 7일조

(34) 등상

## 제 4 장 정계비설립후의 백두산 및 완충지역처리

### 제 1 절 완충지역의 존중

1712년에 백두산에 정계비를 설립하여 한·청 두나라 사이에 국경이 책정되었으나 과거의 관례 또는 습성에 따라 완충지역은 그대로 존중되었고 두 나라는 이 지역내에 일반인의 출입을 여전히 금지 하였다.

그 예를 몇가지 들어 보면 다음과 같다.

1731년(영조7, 창유정 9년)에 청국은 개우초에서 작은 배 4척, 삼판선 2척을 정박시키고 호이산의 육로초소에 있던 관리 1명과 병 20명을 이동시키는 동시에 새로운 관리 1명과 병 20명을 증원시켜 이곳에 주둔시켰다. 이 개우초는 봉황성 이쪽에 있는 곳으로서 초하와 애하가 합류하며 여기에서 생긴 중주의 서부는 봉황성의 관할에 속하고 동부는 한국 영토였으며 또한 양국 匪類의 밀무역 장소였다.

이 처사에 대하여 한국은 김경문을 청국에 파견하여 항의케 하였는데 항의문에는 「……양하 합류하는 곳은 우리 국경에 접하는 곳이므로 변민 가운데 거처른 자가 있으면 어떤 일을 저지를지 모르겠다. ………원컨대 구례를 따르는 것이 좋겠다」고 하였다.

이에 대하여 청국은 이 항의를 받고 이 공사를 중지 시켰다.(35)

그리고 1746년(영조 22)에 청국은 또 다시 봉황성 주변의 비옥한 땅을 이용하려고 이 방면에 쌓아 둔 장책을 동쪽으로 이동시키려고 하였다. 즉 봉천장군 달이당은 개우초지방에서 밀무역자 및 도삼자가 우글거리고 있으므로 여기에 초소를 두고 특히 해방을 증원하여 경비를 하는 동시에 영토를 확장하려 하였다.

이에 한국은 또다시 항의하였는데 「이번 심문소 설치는 정계내에 있어서 한국번계와 관계가 없기는 하다. 그러나 지금 초소를 하려는 곳이 비록 강탄이 경계가 되어 있다고 하지만 양안이 1-2리에 지나지 못하니……개우초 지방의 초소를 정지케 하라」고 하였다. 이에 청국도 장책을 내다 설립하는 공사와 초소를 두는 정책을 중지하였다.(36)

이와 같이 백두산에 정계비를 세우고 압록강으로 국경선으로 정한 후에도 30여년간은 역시 구례대로 봉황성 동편이 국경선으로서 규율되었다. 그러나 이후에 차차 청국은 압록강과 봉황성 사이의 지역에 있던 한국인을 억압하고 토지를 탈취하면서 압록강까지 잠식하여 들어 왔다.

---

(35) 통문관지, 영종 7년신해, 영조실록 권 29, 영조 7년 6월 20일조  
동문회고, 영조 7년신해, 순문설편부사

(36) 영조실록, 영조 22년 4월 19일조,  
통문관지 권 10 기년속편, 영조 22년신유  
동문회고, 보편권 7, 건륭 11년 4월 19일, 침병돈전의 중지를 청하는 상주문. 건륭 11년 7월 26일 건책의 정지를 허락하는 상유  
비변사등록 영종 병인년 4월 19일조,  
승정원일기, 건륭 11년 4월 19일조,

## 제 2 절 완충지대 및 백두산의 귀속문제

봉황성과 압록강 사이의 광활한 지역이 1백여년간 완충지대로서 한·중 두나라 사이에서 잘 유지되어 왔다. 그러나 백두산에 정계비를 세워 西為鴨綠이라 규정한 이래 넓은 완충지대가 형식상 중국영토로 되기는 하였으나 30여년간은 과거의 관습에 따라 규률되었지 중국의 실효적인 주권행사는 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그 후 차차 중국이 압록강 율편 일대로 잠식하여 들어왔다.

백두산은 실사 정계비의 위치보다 북쪽에 있다해도 당연히 중국영토라고 주장할 수는 없다. 그 까닭은 중국이 청국의 조상 발상지로서 중요시하여 의식적으로 편입조치를 행하였지마는 한국도 이 백두산을 한국의 개국 근거지로서 또는 이씨조선의 조상 발상지로서 중요시하지 않은 적이 없기 때문이다.

그 뿐만 아니라 한국과 중국이 오늘날에 와서도 이 백두산에 대하여 민족적 사상면이나 또는 민족의 수호신이라고 생각하는 면에서는 차도를 볼 수 있다. 진실로 한국은 이 백두산을 한국의 조종산으로 생각하는 동시에 한국민족의 상징으로 삼고 있다. 환언하면 한국은 이 백두산을 빼어 놓고 생각할 수 없다. 한국민족의 개개의 마음속에 차지하고 있는 백두산의 영상이 너무나 크게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 증거로서는 오늘날 우리가 엄숙히 부르고 있는 국가의 초두에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

그것이다. 우리는 국토가 양단되어 있는 실정을 한탄하지 않는 사람이 없는 동시에 누구나가 다 백두산영봉에 태극기를 꽂으므로 통일을 해야 한다고 굳게 믿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중국이 오늘날 백두산에 대하여 생각하는 점은 한국과 같이 그렇게 절실하지는 않다.

그 뿐만 아니라 한국이 백두산 정계비를 세운 이후라 할지라도 백두산이 한국의 소유가 아니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다. 한국이 작성한 모든 지도는 백두산상의 천지를 양단하는 선으로서 국경으로 정하고 있다. 일본이 작성한 한국지도에도 일률적으로 백두산상의 천지로써 한·중 국경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한·중 국경은 특히 백두산에 관한 한 양국민의 민족적 감정과 관례에 의거하여 책정되어야 하는 것이다.

더구나 중공이 1962년 11월 15일에 중·인 국경분쟁의 해결을 위해 회담한 후 발표한 성명에 의하면 민족감정을 중요시하고 있다. 즉 동회담 후 주은래는 아세아, 아프리카 제국의 지도자에 보낸 서한 가운데에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회담이 끝났을 때 나로서는 회담중에 제기된 공통점 또는 접근점이 다음의 여섯가지로 결론지어 졌습니다. ① 쌍방의 경계에는 이의가 있다. …… ④ 양국의 경제문제해결에는 히마라야산 및 가라고룸산에 대한 양국민의 민족감정을 고려해야 한다」(37)

---

(37) 외문출판사 편, 중·인경계문제 1963, 북경, p. 26.

이 점을 고려하면 중공은 히마라야산과 가라고름산에 대한 중국인의 감정 즉 이 두 산이 중국의 조종산이며 세계 제일의 산이라고 믿어 왔던 그 산에 대한 중국인의 감정을 앞세워 중국영토로 만드는데 유리한 논거를 삼으려 한 것이다. 중공이 이러한 점을 내세우지 않더라도 우리는 백두산에 대한 우리의 감정과 관례 때문에 중국에 넘겨 줄 수 없는데 하물며 중공이 그러한 논거에 의하여 히마라야산과 가라고름산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는 마당에서 우리의 백두산에 대한 주장은 더욱 굳건해 지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 제 2 편 백두산정계비와 간도 귀속문제

### 제 1 장 지 리 적 고 찰

#### 제 1 절 간도와 한국

한국과 백두산과의 연관은 제 1 편에서도 논급하였거니와 여기에서는 이씨조선과 간도지방과의 특수한 관계를 설명하려 한다.

이씨조선의 개국은 백두산에서 근원을 이룬 두만강과 간도지방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 용비어천가에 의하면 이태조의 5대조인 목조는 두만강 건너편의 幹東에서 元의 5천호 달로하치(遼魯花赤)가 되었다. 이때 이 지방에 살던 사람들이 모두 목조를 따르게 되니 여기서부터 왕업의 기초를 이루었다고 한다.

목조의 아들인 익조는 천호에 취임하였는데 그 위덕이 날로 높아 그 지방민이 모두 흠모하게 되니 다른 천호들이 시기하여 살해하려 했다. 이에 익조는 도망을 치다가 두만강에 이르러 뒤쫓아 오는 적들을 피할 길이 없게 되어 당황하고 있을 때 갑자기 두만강 물이 퇴조가 되어 그를 피하게 하였다 한다.

이와 같은 용비어천가는 이조왕실이 확립된 후 그 朝宗의 위용을 꾸미기 위해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대로 믿을 수 없으나 이조의 선조가 두만강 월편에서 세력을 잡고 있는 것은 사실이며 목조 이하의 능은이 지방에 아직까지 남아있다. 그래서 이씨왕조는 이

간도지방을 「용흥의 중지」로서 존중하였다.(37)

간도지방에는 兀良哈와 韓都里的 2대 여진부족이 있었는데 이들은 하나의 국가형태를 이루지 못한 종족상태였으며 그렇다고 해서 이 지역이 명국이나 한국의 결정적인 영토도 아니었다.

## 제2절 간도의 명칭

간도에 관한 명칭은 한국과 중국에서 각각 그 설을 달리하고 있다. 한국측에서는 間島, 罍島, 良土 등 여러 가지로 표현하는데 그 근원은 다음과 같다. 첫째로 「곰터」설이다. 「곰터」는 언어학상으로 설명한 것인데 神州 또는 神郷이라는 뜻을 가진 「곰터」란 말에서 연유한다고 한다.

즉 간도란 명칭은 한국말의 음역으로서 「곰터」란 말에서 「간도」란 말로 변화해서 생긴 것이라 한다. 고구려 수도인 「환도」와 현토와 발해 및 契丹시대의 「恒都」 등과 마찬가지로의 뜻이 내포된 말로 해석하는 것이다.(38)

또 일설에는 「韓東」설이다. 용비어천가에 의하면 이태조의 5대조인 목조는 원 나라의 5천호란 벼슬을 하였는데 그 근거지는 지금 간도의 일지방인 韓東이었다. 이 「韓東」의 「韓」자가 「韓」자로 잘 못 표현되어 뒤에 언젠가도 모르게 「간동」으로

---

(37) 북로기략 序 PP. 1-2

(38) 이병도 저 국사대관 P. 516

표현하다가 다시 「間島」로 되었다는 설이다.

그리고 한국인이 개간하였다는 뜻에서 墾島라고 한 다든지 북방에 있다는 뜻으로 良土라고 한다는 것은 지나치게 글자 뜻에 얽매어 해석하는 것 같다.

이 이외로 중성간도, 무산간도, 회령간도, 또는 은성간도라는 용어도 많은 기록에서 보이는데 이것은 중성, 무산, 회령, 또는 은성 건너편의 간도지방을 말하는 것이다. 이것은 명백한 지역적 개념이 나타나 있지 않다.

한편으로는 중국측 자료에 의하면 이 지방을 延吉이라 하였다.

이것은 이 지역의 어느 산에는 남색 빛의 연기가 솟아 났으므로 煙集嶺이라고 부르다가 뒤에 연지(烟集)가 연지(延吉)로 변화된 것이라 한다. 그리고 통칭적으로 부르고 있는 간도란 명칭은 한국인 이범윤의 창작이라고 한다. 즉 무산 하류의 강탄으로부터 光霽谷 전면에 中洲가 있어 토인들이 假江 혹은 江通이라 부르고 있었다. 한인이 여기에 먼저 와서 경작을 하고 있었는데 1881년에 한인들이 개울을 파서 洲島를 형성하였는데 1903년에 한국관리 이범윤이 초간국에 공문을 보낼 때에 이 강통을 간도라고 혼칭하여 그 후에 간도란 명칭이 붙게 되었다는 것이다.<sup>(39)</sup>

또 중국의 다른설은 일본인이 한국을 병합하고 대륙으로 진출하

---

(39) 徐騰東 저 동삼성기략 P. 23

王芸生 저 전계서 P. 118

동양척식주식회사 편 간도실정 P. 29

려 하면서 光齋谷 이동을 동간도라 하고 화룡곡일대를 서간도라고 잘못 불러 대대적인 선전을 하였기 때문에 생겨난 것이라고 주장한다.(40)

이 명칭의 유래에서 본다면 다음과 같은 것을 지적할 수 있다. 즉 청국측 자료에 의한 명칭의 유래 중에서 간도란 명칭이 1903년에 있는 이범윤의 보고서 중에서 간도라고 하였기때문에 그 후에 간도라고 되어 버렸든지 또는 일본이 한국을 정복하고 난 이후에 일본이 널리 퍼뜨린 명칭이란 것은 수증하기 어렵다.

왜 그러나 하면 간도란 명칭이 1903년에 비로서 생겨난 용어가 아니라 훨씬 그 이전부터 명명되어 온 지명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연집강이란 데서 연길로 변하여 진 것이라고 하는 것은 그 지방의 자연적 특수증조에서 명명되는 지명이 많기때문에 일용타당성이 있는 설 같기도 하다. 그러나 중국측 스스로 그곳의 통칭이 간도라고 자인하면서도 연집강의 訛音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자연적으로 생겨난 지명에 대한 조작적 또는 관창적 지명이라고 할 수 밖에 없다.

한국측 자료에 의한 여러 설 가운데 곱터설이나 알동설은 모두 조상의 발상지란 뜻에 귀일하게 된다. 두만강이 오늘 날 우리에게서 그릇된 내용을 가진채 국경하천으로서의 개념을 지니고 있

---

(40) 서휘동 저 동삼성기략 P. 24

王茲生 저 전계서 P. 118

청조문헌통고 권 347 외교 P. 11

지마는 우리 조상들은 두만강 따위가 국경하일 수는 없었던 것이다. 단군이 개국한 땅이 백두산이며 이조왕업의 시초가 알동이기 때문에 우리 조상들의 국경은 적어도 두만강은 아니었다.

이러한 의미에서 곰터설 또는 알동전와설이 가치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 제 3 절 간도의 범위

간도의 범위는 일정하지 않다. 1712년에 설립한 백두산 정계비에 입각한 한청 국경분쟁 지점은 오늘 날 우리가 알고 있는 간도의 범위 보다 훨씬 넓다. 그 백두산 정계비에는 「동위 토문서위 압록」이라 하였으니 이 문자대로 해석하면 토문강이 송화강의 상류이므로 백두산에서 송화강과 흑룡강으로 둘러 싸인 남만주 일대가 포함될 것이다.

한청 국경분쟁시의 한국측 주장은 한국인이 많이 거주하며 한인 소유지가 많은 지금의 간도지역 일반이 지칭되었다. 그리고 소위 간도협약에 의하여 결정된 간도는 연길, 화룡, 왕청 및 휘춘현과 안도현 일부를 내포하고 있다.

그리고 압록강 건너편을 막연히 서간도라 하고 두만강 건너편을 동간도라고도 한다. 동간도를 다시 두개로 나누어 백두산과 송화강 상류지방을 동간도 서부라고 하고 두만강 내안지역을 동간도 동부라고도 한다. 이 동간도 동부지역을 일명 북간도라고도 하는데 일반적인 개념에서의 간도는 이 북간도를 지칭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간도는 동일한 지역만에 한해서 불리우는 명칭이 아니기 때문에 그 범위를 확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중국과 일본간의 논쟁의 결과로는 서쪽 부면에는 백두산을 비롯하여 서북으로 노령산맥과 북쪽의 老翁嶺山맥을 거쳐 태평양 이서의 琿春지방을 포함하고 있다. 이 산맥들과 두만강 사이를 분쟁지역의 간도로 볼 수 있으며 이 면적이 30.134 평방「키로미터」다.(41)

---

(41) 武見芳二 論文 滿州邊境 세계지리 제1권 P.280

## 제 2 장 경 제 적 고 찰

### 제 1 절 한국의 완충지대에의 이민공인

두만강 건너편에서도 압록강 건너편에서도 같이 완충지대를 설치하여 민간인의 왕래를 금지하여 왔다. 백두산 정계비 설립이후에 있어서의 완충지대 보존을 위해 양국 정부가 행한 조치를 보면 다음과 같다.

1714년 (숙종 40년, 청강희 53년)에 경원의 건너편과 訓戎의 건너편에 중국인이 와서 가옥을 건축하고 토지를 개간하며 길을 닦고 있었다.

이에 한국은 중국에 항의하여 「옛날부터 강북일대가 空曠無人하여 우리에게는 관련되는 일이 없었는데 하물며 이와 같이 가까이 접하면 의외의 사건이 없을 것이라고 보장하기 어렵다.」고 하였다. 그랬더니 중국은 이 항의를 받아 드려 이들을 소환해 갔다.(42)

1748년 (영조 24)에 訓戎鎭 건너편의 간도에 중국인이 또 와서 가옥을 짓고 토지를 개간하였는데 한국정부는 이를 항의하였고 중국정부는 이들을 소환해 갔다.(43)

---

(42) 동문회고 숙종 40년 갑오, 철쭉훈음월변방목사  
숙종실록 숙종 40년 6월을사, 8월 8일, 12월 3일조

(43) 통문관지 영종대왕 24년 무진  
동문회고 영종 24년 무진, 금훈용대경전사사

한편 이 지역의 한국인 침범은 막을 길이 없을만큼 심하였다. 이들을 체포하여 사형에 처하기도 하고, 이 침범사건을 막지 못한 지방관리들을 사형 또는 파면을 시키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였는데도 침범사건은 막을 길이 없었다.

이 침범사건이 국가의 철저한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범월사건이 계속적으로 일어나지 않으면 안된 이유는 한국인의 절박한 사정이 있었기 때문이다. 즉 이 절박한 사정은 주로 경제적 정치적인 것이었다. 여기에 앞서 말한 지리적요소와 미신적요소가 부수하게 되었다.

정치적인 요소는 이 보다 훨씬 이후인 20세기에 들어와서 작용했다. 일본이 한국을 침략하고 병합하게 되니까 한국의 독립운동가들이 간도지방으로 들어 갔던 것이다. 그리고 미신적인 요소는 정감록에 기인한 것이다. 미신을 신봉하던 그 당시의 한국인들은 정감록 중의 「구곡종어삼봉 구인종어장백」이란 구절을 백두산과 압록강 상류지방으로 해석하여 이 곳으로 옮겨갔던 것이다.(44)

경제적인 요소로서는 함경도 지방의 토질이 척박한데 반하여 간도지방은 비옥한데 있다. 간도지방의 수확고가 함경도 지방의 그것에 비하여 3배나 되었다. 그리고 백두산을 비롯한 간도지방에는 山蔘이 많이 자랐고 이 산삼이 중국 또는 일본에 판매되어 고액의 값을 받을 수 있는데도 범월사건의 발생은 기인한다.

---

(44) 이 사실은 지금도 계룡산 도읍설을 신봉하고 그 주위에 많은 사람이 모여 들고 있는 사실로서도 이해할 수 있다.



그 뿐만 아니라 백두산 주변은 각종 짐승이 서식하여 수렵의 대상지로서도 적합한 점은 한국인을 유혹하는 요소가 되었다.

특히 한국인이 많이 간도지방으로 이주하게 된 것은 1869-1870년 사이에 함경도 지방에 극심한 흉년이 들은 데 있다.

이때의 참상을 길림지리지요에 기록하기를 「 굶주려 죽은 시체가 길가에 즐비하였고 처와 딸을 청국인에게 팔 한 두 되를 받고 팔아먹은 자가 많았다」(45)고 하였다. 흉년을 당한 이 지역 사람들은 가족을 이끌고 밤을 이용하여 간도와 노국영토로 이주해 갔다.

이 당시 露領으로 이주한 통계를 보면 1868년에 165호였던 것이 1869년에는 766호로 증가하였다고 한다.(46) 이것을 보면 露領보다 가까운 간도지방에의 이주는 더욱 많았을 것이 추측된다.

이 해에 정부에서도 고서를 내려 「 부모가 있는 나라를 버리고 낯선 땅을 찾아 가는 국민을 가린해서 어찌 볼 수 있느냐」고 하고 지방관리의 행패를 일소하여 백성을 위무하도록 하는 고식적인 지시를 내렸다.(47)

그리고 1876년에는 김유연을 안무사에 임명하여 시정불비점을 보정케 하였다. 그러나 정부는 이주자를 도저히 막을 길이 없어 완충지대의 이주금지를 완화하였다. 정부는 오히려 간도지방에의 민간인 이주를 장려하면서 경작권을 인정하고 지권을 발급하여 토지

---

(45) 신기석 논문 간도귀속문제연구, 중앙대학교개교 30주년 기념논문집 P. 41

(46) 흑룡강조사사업회 편 極東に於ける黄色人種問題 PP. 109-110

(47) 규장각 편 일성록 고종 을사 11년 11월 23일조

대장을 만들어 세금까지 징수하였다.(48)

이와 같이 정부가 이주를 공공연히 인정하게 되자 한국인의 이주는 급증하게 되었다. 1881년에 청국이 훈춘에 招墾局을 설치하여 비로소 개간사무를 취급하려 하였다. 이때 청국은 간도지방에 한국인이 이미 수천인이 이주하여 2천畝 이상을 개간하며 상주하고 있음을 알고 한국정부에 항의하게 되었다.(49)

간도지방에 거주하는 한국인의 수가 이와 같이 너무 많으니 청국에서도 이들을 모두 추방할 수 없었다. 그래서 1883년에 청국 정부는 한국정부에 앞으로 1년내에 이들을 모두 소환하도록 강력히 요구하는 한편 간도에 거주하는 한국인을 추방하겠다고 종성 및 회령군에 통고하여 왔다.

이에 비로써 간도에 있는 한국인들은 청국이 두만강과 토문강을 혼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이들은 고전 및 구전되어 오던 백두산 정계비를 직접 탐험하고 지형을 조사하여 와서 종성, 은성, 회령 및 무산인들이 집단적으로 간도는 한국 영토라는 것을 종성부사 이정래에게 호소하였다. 그 호소내용은 「…… 토문 本源은 분수령 위의 정계비 있는 곳에 있으며 이것이 진정한 국경이다. 두만강은 이와 반대로 우리 국내에서 발원하는 강으로써 중국이 참견할 곳이 아니다. 중국이 토문이라고도 하고 도문이라고도 하는 것은 分界立碑處에서 발원하는 토문과 전혀

---

(48) 동화속록 광서 7년 10월 신사조

(49) 통문관지 권 11 기년속편 금상 18년 신사조

다른 두만강을 가르키는 것이다」(50)라는 것이다.

## 제2절 간도지방에의 한국인 이주 및 경작

간도지방에로 한국인이 이주해 간 기록은 다음과 같다.

1895년의 조준우의 보고에 의하면 「韓人移入者已過數萬戶皆為清人之臣制 清人不滿韓人百分之一也」(51)라 하였고 1897년의 박일현의 보고에 의하면 「我民之所居者 無慮幾十萬戶……專欲我民之力而清俄民則不過十分之一」(52)이라고 하고 있다.

여기서 한국인이 수만호 또는 몇 10만호라고 표현한 것은 지나친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나 청국인이 한국인의 100 분지 1 또는 10 분지 1 이란 뜻은 압도적으로 한국인이 많았다는 것이다.

이 것을 뒷 받침할 만한 노국측 자료가 있다.

즉 노국인 크라-베가 조사보고한 바에 의하면 한국인이 1863년에 13호의 가족적 이주자가 포세트구에 들어 와서 정부의 허가 없이 경작에 종사하였다고 한다. 그리고 약 20년 후인 1884년에는 1,764호에 5,447인의 한국농민이 3,350 메샤친(53)의 토지를 점유하고 있었으며 포세트 구의 남부에는 한국인 부락 10

(50) 篠田治策 저 白頭山定界碑 PP. 135-136 신기석 전개논문 P. 45

(51) 북여요선하 칠계공문고 P. 99

(52) 북여요선하 사계공문고 P. 101

(53) 1 메샤친은 1町 1反 3 畝

개소가 있었다」고 했다. 그리고 이어서 「1880년에는 한,로 및 한,청 국경에 한국인이 8,760인으로 6,500 배샤친을 경작했다. 가라지노프 참사관이 조사한 1806-7년간에 이 지방에 사는 한국인 수가 귀화인이 16,395인이고 미귀화인이 36,500인이라고 하였으나 나는 미귀화인을 이에 3할을 더한 50,000인 이상이 된다고 생각한다」(54)고 하였다.

비록 간도지방에의 통계자료가 남아 있지 않다 하더라도 이 자료는 연해주 보다 가깝고 좋은 조건인 간도지방에의 이주자는 이 보다 훨씬 많았을 것이라고 추측된다.

그리고 일본측 통계에 의하면 다음과 같다.(55)

연도 국별		1907	1910	1913	1917	1922	1926	1929	1935	1943
		한국인	71,000	109,500	161,500	195,611	323,806	356,016	382,405	479,416
청국인	23,500	33,500	36,900	48,466	70,698	86,349		141,759		
%	한	75,1	76,6	81,0	80,2	78,48	75,75		70,46	
	청	24,9	23,4	19,0	19,8	21,52	24,25		29,54	

(54) 후룡강 조사사업회 편 전계서 P. 109-110

(55) 동양척식주식회사 편 전계서 P. 111

武見芳二 전계논문 PP. 275 및 280

조선총독부 편 최근간도사정, 1922, P. 122

이 도표를 보면 간도에는 한국인이 중국인 보다 압도적으로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1907년부터 한국은 국운이 기울기 시작하자 독립운동자 민족주의자 및 애국자들이 많이 이주하게 된 것이다. 제 2차 대전시의 한국인의 간도거주자는 120만인에 달하였다고 한다.

그리고 1917년 현재의 간도지방에 있어서의 한.중인의 토지경작 면적을 보면 다음과 같다.(56)

국별	지방별	무산간도	회령간도	증성간도	해란하이남 북도소	동이북
한국인		方里 6,273	3,922	8,761	15,754	10,591
중국인		910	145	331	11,706	13,830
%	한	87,32	96,44	96,30	57,00	43,37
	중	12,68	3,56	3,70	43,00	56,63

이 도표를 보면 회령간도 무산간도 및 증성간도는 대다수의 경작지가 한국인의 소유로 되어 있다. 이 당시 한국인은 중국인의 소작을 많이 하고 있었음을 참작할 때 사실상으로 한국인이 경작하고 있는 면적은 이것을 훨씬 능가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간도지방에는 많은 한국인이 건너가서 개간하였고 따

(56) 동양척식주식회사 편 전제서 P. 262

라서 한국관청으로 부터 지권을 받아 농경생활을 하였다.(57)

간도지역에 한국인이 많은 이유중 경제적 요인이 제일 중요하지마는  
하는 한국정부가 이주를 공인하게 된 사유에는 이 지역에 대한  
영토적 의식이 작용한 것이다.

한, 중간의 넓은 완충지대중 압록강 건너편은 중국영으로 넘어간  
지 오래된 사실은 한국정부로 하여금 이 간도지역에의 영토적 의  
식을 싹트게한 계기를 주게된 것이다.

---

(57) 王益匪 著 東北九省地誌(一)

중화문화출판사업위원회편, 민국 45년 P.42

### 제 3 장 간도귀속문제의 발단

#### 제 1 절 어윤중의 문제 제기

어윤중이 서북경략사로서 경원에 머물다가 앞서 말한 바와 같이 간도에 거주하던 한국인들이 정계비와 지형을 조사하고 돌아와서 토문강이 진정한 국경이지 두만강이 국경이 아니라는 보고를 종성 부사에게 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어윤중은 민간인 진술을 그대로 신빙할 수가 없어서 1883년에 종성인 김우식을 시켜 정계비와 분계江源을 조사해 오도록 시켰다. 김우식의 보고는 과연 민간인들이 말하는 바와 같은 내용이었다.(58)

이 보고로써 확증을 가진 어윤중은 종성부사 이정래로 하여금 돈화현에 조회케 하여 토문강이 한청국경임을 주장케 하였다. 즉 그 조회문은 「…… 우리들이 개간하고 있는 곳은 토문강 이남이다. ……… 우리는 토문강으로써 경계로 하고 뒤에 있는 두만강을 지켜 왔으며 토문강과 두만강의 사이는 황지로 남겨 두었다. …… 강회 임진년에 목극등이 토문강으로써 경계로 하여 동위 토문 서위 압록이라는 비문을 세웠다.

근래에 듣건대 길림장군은 우리나라에 공문을 보내어 토문강

---

(58) 북여요선 하 탐제공문고

정약용 저 전 계서 권9 백두산정계고 PP.5-6

이북과 이서의 한국인을 소환시킨다고 한다. 이것은 돈화현이 두만강과 토문강을 오인하고 있는 것이다」고 하여 토문강을 경계선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이어서 「……봉황성 밖은 황지였었지마는 압록강에 이르는 곳에 초소를 두었는데 만약 두만으로서 토문이라 한다면 중국은 왜 간도지방에는 초소를 두지 않았느냐?」고 하였다. 이것은 압록강 밖은 정계비에 서위압록이라는 내용과 중국이 실질적으로 개척을 먼저 하였다는 이유로 이의를 제기치 않으나 토문강 이남만은 정계비에 동위토문이라고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한국이 실질적으로 먼저 개척하고 또한 주민의 대부분이 한국인이란 이유로 한국영토라고 주장하였던 것이다.(59)

## 제 2 절 한국정부의 주장

어윤중은 다시 서울에 올라 와서 이 사실을 정부에 보고하고 토문강 국경설을 한국정부가 정식으로 주장할 것을 건의하였다.

이에 고종왕은 중국에 대하여 간도가 한국영토임을 주장하는 공문을 보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한국은 원래 토문강으로써 경계로 하여 왔다. 강희 51년에 묵극등이 분수령상에 비석을 세우고 토문강으로써 경계로

(59) 북여요선 하 탐계공문

경약용 저 전제서 권9 백두산정계고 P. 5-6



하였다. 한국은 토포문강 이남을 비워서 변민이 들어 와서 생활하는 것을 금지하였으나 근년에 와서 변민이 들어가 살고 있다.

이것은 우리 백성이 우리영토에 거주하는 것이니 아무런 탓도 할 수 없다」고 하여 간도에 거주하는 한국인을 추방하려는 청국의 처사를 비난하고 토포문강 이남이 한국영토란 것을 강력하게 주장하였다.

그리고 이어서 「……경계가 분명치 못하면 후일에 양국인 사이에 싸움이 그치지 않을 것이니 마땅히 한번 조사함이 좋겠다」고 하여 대표자를 보내어 경계를 조사하여 확실히 할 것을 제안하였다.(60)

이에 대하여 청국의 이홍장은 1885년에 한국에 대하여 간도에 있는 한국인을 소환해 갈 것을 요구하고 「……한국인이 한국땅에서 사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 이것은 전후 상치되는 말이다.

무릇 사건은 공포하여 정확히 조사 할 것이다. 한국 왕은 신속히 상당한 관리를 파견 할 것」(61)을 요구 하였다.

한편 이홍장은 길림지방관에게도 경계를 조사하여 분명히 처리하도록 명령하였다.

이에 한국의 외무대신 김윤식은 공문으로서 「……광서 9년 가을에 기한을 정하여 소환하려고 하는데 중민의 호소에 의하면 그곳

---

(60) 篠田治策 저 전계서 PP. 143-144

(61) 통문관지 권12 기년속편 금상 22년을유  
篠田治策 저 전계서 PP. 143-144

(필자주 간도)은 길림경계가 아니라 조선영토이며 바와 지도가 있어 증거가 된다. …… 안변부사 이중하를 파견하여 토문감계사로 하니 …… 강계의 정확한 형상을 심찰하면 스스로 해명될 것이다」고(62) 통고 하였다.

### 제 3 절 乙酉勸界談判

위에서 밝힌 바와 같이 백두산 정계비에 기록된 「동위 토문」이란 것으로 인한 해석차이로 한청 두 나라는 이를 조사 하기 위하여 대표를 파견하여 1885년 9월 30일 부터 12월 3일 사이에 답사를 하며 3회에 걸친 회담을 하게 되었다. 한국측 대표로는 이중하(안변부사)가 임명되고 청국측 대표로는 덕옥, 가지계 등이 임명 되었다.

두 나라 대표가 회의 벽두부터 의견이 맞지 않아 회의는 전도 낙관할 수 없게 되었다.

즉 한국측 대표는 백두산에 정계비가 있으니 이를 정확히 조사 함으로써 강제하려 하고 청국측 대표는 도문강(두만강)이 국경임이 명백하니 다만 원류지방에 있어서의 본류를 찾아 결정하면 된다고 맞섰던 것이다.

이러한 내용으로 두 나라 대표는 공박하다가 결말을 못보고 서로 자국의 주장을 상대국 대표에게 문서로 조회하였다.

---

(62) 통문관지 권 12 기년속편 금상 22년 을유조

중국 대표가 한국 대표에게 전한 주장은 다음과 같다.

「청국은 귀국의 두 차례에 걸친 대사에 재정을 아끼지 않고 장수에 명하여 보호하였다. 신하된 자로서 어떻게 하여 감사하고 보은하려 하는가? 이 지방이 과연 한국 땅이면 청국이 영토 때문에 어찌 이 구구한 필론을 하겠는가? 비석은 사건을 기록하는 것이지 분계를 증거함에 만족하지 않다. 도문강이 천연의 경계임은 우리나라의 고전에 명백하다. 귀국이 이치상으로는 잘 못 된 줄 알지않느냐? 백두산에 발원하는 도문강으로써 경계로 할 것을 결정한 다음에 越壘民을 보호할 것을 제안하면 모르거니와 전과 같이 사슴을 가리켜 말이라고 하고 두만이란 두 글자로서 일시적인 혼란을 일으킨다면 과오를 범하게 될 것이다」(63)

이에 대한 한국대표의 반박은 다음과 같다.

「청국 황제가 재정을 아끼지 않고 우리 나라를 보호한 은혜는 전국민이 영원토록 잊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 명령을 받아 조사하려 함은 오로지 비가 어디에 있으며 퇴가 어느 방향에 있으며 물이 어느 방향으로 흐르는가를 조사하려는 것이다.

한번 상세히 조사하여 우리 주장이 모순이 없고 거짓이 아님을 밝히려 하는 것 뿐이지 한발 자욱의 영토도 탐 내려 하는 것은 아니다. 두만강 역시 백두산의 한 골자기에서 발원하여 우리

---

(63) 백산학회간 백산학보 제4권, 1968, 감계사문답 PP. 257-259  
문답기 교섭아문상 PP. 262-263  
신기석 전계론문 P. 48  
篠田治策 전계서 P. 156

나라의 내지를 흐른다. 두만이란 강명은 우리의 방언이다. 지금 조사하려는 것은 토문이다. 그리고 청국은 토문과 도문을 혼동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나라 사람이 이를 들으면 놀란다.

오라총관 목극등이 비를 세워 「동위 토문」이라 하였다. 동쪽 수원을 따라 내려 가면 두 벽이 문과 같이 계속되어 있는 곳이 있다. 그러므로 우리 나라 사람은 이 강을 토문강이라 하고 지금에 이르기까지 전해져 내려 온다. 만약 두만으로써 토문이라 한다면 동위 토문의 뜻과 부합하지 않는다. 그것은 그 발원이 전연 碑堆와 관계 없는 까닭이다. 그리고 좌우를 바라보면 구령(溝)이 확연하다. 동쪽 구령으로 부터 내려 가면 석퇴와 토퇴가 있다. 이 것이 우리가 두만이 국경이 아니라는 근거로 한다」(64)

이와 같이 제1차 회담에서는 토문강과 두만강이 동일한 강이냐 아니냐 하는 문제로 논의하며 결론을 내리지 못 하였다. 그런데 이 토문강과 두만강은 사실상 다른 강이며 이 토문강은 송화강의 한 상류인 것이다. 그래서 중국대표는 두만강이 아닌 토문강이 따로 있다는 것과, 백두산 정계비에는 「동위 토문」이라는 문자가 있다는 것을 확인 한 다음 만일에 이를 시인하게 되면 송화강 이남의 땅이 논의의 대상이 될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이를 일부러 묵살하려고 하여 토문 즉 두만이라고 주장하게 된 것이다.

그리고 10월 6일 이후의 제2차 회담에서 중국대표는 碑堆移転

---

(64) 백산학회간 전계서 문답기 PP. 263-265

신기석 전계론문 PP. 48-49 篠田治策 전계서 PP. 157-158

說을 주장하였다. 이들의 주장은 「듣건대 비는 백여근에 불과한 것이라 하니 어찌 사람이 이 것을 옮김이 없었겠느냐?…… 비 옆에 석퇴와 목책이 있다고 하나 다 인력으로써 만든 것이다.

그 후 2백년이 지났는데 어찌 목책이 썩지 않았을 것이며 후에 새로 설치하였다면 두 나라에서 공문으로써 조회하였을 것인데 길림과 훈춘에는 그 기록이 없을 수 있는가?」라는 것이었다.

이에 대한 한국대표의 주장은 「비를 이동시켰다는 것은 뜻밖의 말이다. 설사 비를 옮길 수 있다하더라도 토퇴와 석퇴도 옮길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석퇴 위에는 나무가 자생하여 벌써 아람드리가 되어 있지 않은가? 만약 옮긴다면千百의 인부가 소요되었을 터인데 귀국의 사냥꾼이 백두산에 내왕하는 자가 그치지 않는데 이런 사실을 본 사람이 있다면 증거를 제시하라」(65)고 하였다.

두 나라대표는 이상과 같이 싸우다가 중국의 압력으로 두만강 상류와 토문강 주변을 조사하고 나서 11월 27일부터 제 3차 회담이 시작되었다. 이 때에 중국대표는 비문의 「동위 토문」은 실제 지형과 부합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변명 할 길이 없어

---

(65) 백산학회간 백산학보 제2호, 1967, 토문감계별단 PP.170-171. 백산학회간 백산학보 제4호 문답기 PP.265-267  
신기석 전계론문 PP.49-50 桑田治策 전계서 PP.159-164  
백산학회간 백산학보 제2호 토문감계사실  
감계사 이중하 을유상제 P.170

이제는 백두산 정제비 부인설을 내세웠다.

즉 중국대표는 「정제비에 관한 기록은 청국에 없으므로 신빙하기 어렵다. 이 비는 뒷 사람의 偽作이 아니면 당년의 착오다.

오라총관은 강희시대의 관리인데 당시 오라아문에는 滿洲文이 있었다. 그러므로 그 당시에 비를 세웠다면 그 비에는 滿韓 양문 자로써 썼을 것인데 이 비에 만주문자가 한자도 없다는 것은 의심할 첫째요건이다. 이 비문의 年限이 백년이 넘어 비바람에 상하지 않을 수 없는데 지금 보니 단연코 완전하니 이것이 의심할 둘째 요건이다. 입비처가 강원과 부합하지 않고 남쪽으로 40리나 떨어진 소백산 북파의 물도 송화강으로 들어 가는데 그 「동위 토문」이란 어디 있는가 하는 것이 의심할 셋째 요건이다」고 하였다.

이에 한국 대표의 주장은 다음과 같았다.

「정제비」에 관한 기록이 청국에 없어 신빙하기 어렵다 하니 우리 나라에 목극등의 주문을 배껴놓은 것이 있어 일람에 제공하니 조회하라. 당년의 착오란 것은 말이 안된다. 후인 위작설도 말이 안된다. 비면에 만주문자가 없다 하여 의심하는 것은 의외의 주장이다. 청국이 개국 이래 우리 나라와의 교환 공문에 만주문자를 쓰지 않았으며 광주에 있는 삼전도 비석에도 만주문자는 없다. 비면의 글자가 상하지 않았다는 것은 의심을 하기 위한 것이다. 170년간에 어찌 상할리 있는가? 단지 토문강의 수류가 송화강으로 들어 가서 구획을 지을 수 없으나 옛날의 일은

알 도리가 없다.(66)

이 것을 보면 한국대표는 백두산 정계비도 하나의 조약으로 보고 이를 시행해야 한다고 끝까지 주장하였고 중국대표는 「查勘正流說」을 주장하다가 「碑堆移伝說」로 수정하더니 이 이론들이 근거가 박약하게 되니까 「定界碑否認說」로 발전하여 그들의 주장이 갈팡질팡하였다. 그러나 이중하 대표가 토문강을 국경이라고 주장하였으나 토문강 이하의 송화강과의 관계를 명백히 하지 못하였다.

#### 제4절 丁亥감계 담판

을유감계 담판이 실패로 돌아간 뒤에 중국은 한국에 다시 국경 담판을 할 것을 제안하여 1887년 4월 18일 부터 1887년 5월 18일까지 국경회담이 재개 되었다. 이를 정해감계담판이라 한다.

이때의 한국은 중국의 세력 밑에 있었기 때문에 국경문제는 대등한 관계 속에서 다루어지지 못하였다.

회의의 처음부터 중국대표 덕우, 진영 및 방량 등은 한국대표 이중하에게 위협으로 대하고 두만강 상류 조사를 하기로 일방적으로 결정하였다. 중국대표의 조회는 다음과 같았다.

---

(66) 백산학회 간 백산학보 제4호 문답기 PP. 271-272

篠田治策 전계서 PP. 183-186

「총리각국사무아문 으로부터의 공한에 길림과 조선과의 경계는 茂山 이동 녹돈도에 이르기까지는 도문강의 天然界限이 있어 조금도 의문이 없으나 무산 이서 분수령 상의 입비처 까치가 분명치 않기 때문에 위원을 파견하여 입회조사 할 것에 대하여 재가가 있었으니 명령을 알려서 철저히 조사 할 것이다」(67)고 하였다.

이에 한국대표는 갑신정변 이후에 있어서의 중국 군대의 한국진주 및 원세개의 행패 등을 고려한 나머지 중국대표에게 事理가 통하지 않을 것을 깨닫고 회담을 어떻게 하던지 유산시킬 궁리부터 하였다. 그래서 한국대표는 중국이 두만강 상류중의 제일 남쪽에 있는 石乙水로서 국경선으로 하자는데 대하여 백두산 정계비의 정당성을 논의하면서도 중국이 수락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한 두만강 상류중 제일 북쪽에 있는 紅土水로서 국경선으로 하여야 한다고 하였다.(68)

이와 같이 한중 대표는 이 정해담판에서도 아무런 결론을 내지 못 하였다. 이중하 대표가 정계비와 석퇴의 정당성을 주장한 것은 좋으나 다만 중국의 압력에 못 견디어 홍토수설을 주장한 것은 유감이었다.

그 후에 한국정부는 원세개를 통하여 정해담판에서 주장한 한국대표의 의견이 정부의 훈령과는 관계 없이 중국정부의 압력에 의한

(67) 백산학회간 백산학보 제 2호 조희담초 PP.192-210

신기석 전계론문 PP. 60-69

(68) 동상



것이라 하여 취소하고 다시 감계를 계속할 것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청국은 「백두산 감계의 건은 한국의 다른 의견이 있으면 총리사무아문에 신청하여 처리할 것이다」고 회답하였다.(69)

## 제 4 장 간도에 있어서 한·중의 경쟁적 행정 조치

### 제 1 절 중국의 조치

중국은 한국과 17세기부터 간도지방에 무인정책 (완충지대) 을 써 오다가 1712년에 백두산에 정계비를 세워 국경을 압록강과 토문강으로써 책정하였다. 그 후에도 무인정책을 계속적으로 써 오다가 일방적으로 중국은 1867년에 이 무인정책을 폐기하고 중국인의 간도지방 이주를 허가하였다.

그리고 1881년에 간도에 돈화현을 설치하고 중국인에게 개간을 장려하였다. 이 때에 이 간도내의 많은 한국인이 농사를 짓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한국 정부에 소환을 요구하였다. 합은 전술한 바와 같다.

한중 감계담판이 실패로 돌아가자 중국은 1896년에 간도지방에 행정구역을 획정하였다.

즉 중국은 간도를 4대보로 나누고 39사를 두어 사에 향약社長을 두었다. 1903년에 청국은 국자가에 연결청을 두고 太植子에 분방경력廳을 두어 지방행정 사무를 시작하였다.

1903년에 주한 중국공사 허태신은 간도에 있는 한국관리사 이범윤의 행위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 제 2 절 한국의 조치

한국은 중국과 17세기부터 간도지역을 완충지대(무인지대)로 유지해 왔으나 1712년에 백두산에 정제비를 세워 토문강으로써 국경을 정하였다.

이 이후에도 완충지대로서 이 지역에 민간인의 출입을 금지하였으나 1860년 경에 생활처를 찾아 들어가는 유민을 막을 길이 없어 이들을 묵인하였다가 뒤에 함경도 관찰사의 소관하에 두기로 결정하였다. 그래서 간도내에서 경작하는 한국인에게 토지경작권을 인정하는 地券을 발부하고 地籍簿도 작성하였다.

그 후 1883년에 중국에 뒤이어 정식으로 간도지방의 封禁정책을 해제하였으며 1885년에는 중국에게 정식으로 공문을 보내어 토문강이 한중 국경선임을 통고하고 만일에 이의가 있으면 현지調査를 하는 동시에 담판을 하자고 제안하였다.

1885년과 1887년 두 차례의 국경담판이 실패로 돌아 가자 한국은 군대를 두만강 연안에 주둔시켜 간도에 있는 한국인을 보호하며 중국의 간섭을 배제하려 하였다. 1901년 3월에는 辺界 警務署를 회령에 설치하고 무산 및 종성에 분서를 두어 간도에 있는 한국인의 보호에 힘 쓰며 소송사무를 위주로 하였다.

이 때 한국은 간도지역을 담당할 군수들에게 간도에 있는 한국 戶數와 토지 경작 면적을 조사케 하였는데 그 내역은 다음과 같다.

은성간도에는 354호(청은 30호)가 110結 81負 1束을, 종성간도에는 53結 65負 2束을, 무산간도에는 1,162戶가 267結

39 負를 그리고 경원간도에는 280 戶가 127 結 10 負를 경작하고 있었고 지적부에 등록이 되었다.(70)

1902년에는 이범윤을 간도관찰사로 임명하여 간도에 파견하여 한국인의 보호와 호구의 조사를시켰다. 1903년에는 정부가 다시 이범윤을 간도관리사로 임명하여 간도의 지적을 정리하고 세금을 징수하도록 하여 주권행사를 실질적으로 행하였다. 이러한 동안에도 중국은 간도에 있는 한국인을 괴롭히며 중국이 행패를 부리니까 동년 11월에는 茂山鎮衛隊長과 무산군수 등은 군대를 이끌고 간도에 들어 가서 중국병과 교전까지 한바 있다.

1902년 6월 25일에 이범윤은 간도 각지방의 호구와 재산을 조사하여 1903년 5월까지 호적부 52책을 편제하고 한인所有의 부동산 3,674,496원 34전을 조사하였다.

그리고 중국의 행패가 날이 갈수록 심하여지니 이범윤은 한국정부에 군대를 요청하는 한편 스스로 간도에 있는 한국청년을 모집하여 포대를 조직하였으며 모자산, 마안산 및 두도구에 兵營을 만들어 한민보호를 위해 군대훈련을 시켰다.

이러는 한편 한국정부는 다시 주한중국공사 허태신에게 간도는 한국영토이며 따라서 한국인이 이미 수만인이 거주하고 있는데 중국이 불법적으로 간도에서 주권행사를 하려 하고 있으니 이를

---

(70) 백산학회 간 백산학보 제 5호, 1968, 간도거민

藝關籍冊(全) PP.256-270

철회하도록 요구하였다.(71) 이 한국의 요청을 받은 중국은 1904년 3월 16일에 공문으로써 「이범윤을 간도에서 소환시키는 동시에 아울러 越江한 군대를 두만강 右岸에 철수시키고 대표를 파견하여 경계를 책정할 것」을 회답해 왔다. 이러한 중국의 태도는 과거의 울유 또는 정해년의 강제담판 때와는 판이하게 다른 태도였으며 이것은 일노전쟁이 일어난 후이기 때문에 종전과 같이 강압적인 태도는 더 취할 수 없게 되어 있는 실정을 잘 표시하는 것이다.

그래서 동년 6월 15일에 한국의 최금용과 김병약(한국문제관 겸 경무관)은 중국의 진작언과 호서갑과 함께 정부의 아무런 전권위임도 없이 간도문제에 관하여 일종의 합의를 보았다. 이것은 국제정세가 복잡할 뿐만 아니라 한중 양 국민이 자주 충돌이 일어나니까 현지 책임자로서 일시적인 해결책으로서 주선한 것이지 아무런 구속력을 갖는 성질의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그 합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양국의 경계는 위선 백두산 碑記를 표준으로 하나 양국 정부가 대표를 파견하여 협의하여 결정키로 한다.

(2) 이범윤이 북간도를 관리함은 중국정부는 인정하지 않는다란 것이다.

---

(71) 篠田濬策 저 전제서 PP. 229-241

이범윤은 이 이후에 노국측에 가담하여 대일전쟁을 하게 되었고(72)  
이 이후 한동안 간도분쟁은 표면화 되지 않았다.(73)

---

(72) 통일보, 1969. 6. 10, 5면 김홍일 특문  
중공이 백두산을 달라다니

(73) 篠田治策 저 전계서 PP. 246-249

## 제 5 장 간도협약의 체결

### 제 1 절 일본의 간도문제 개입

일본이 對露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난 후에 1905년 11월 17일에 소위 을사보호조약을 체결하여 한국의 외교권을 탈취하여 갔다. 외교권을 탈취 당한 한국은 1906년 10월에 통감에게 간도에 거주하는 한국인을 보호해 줄 것을 의뢰하였다.

이 의뢰를 받은 일본은 간도에 통감부 파출소를 설치하고 中國通인 齊藤季次郎 중좌를 간도파출소 소장에 임명하였다. 그러는 한편 일본은 중국에 「간도가 중국영토인지 그렇지 않으면 한국영토인지 오랫동안 해결을 보지 못하고 있으나 그곳의 한국주민 10만여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74) 일본이 官吏를 파견한다는 요지의 공문서를 발송하였다.

그리고 그 후에 통감부는 간도가 한국영토임을 확인하고 간도를 북도소·회령간도·중성간도 및 무산간도의 4구로 나누고 거기에 도사장 1명씩을 두고 다시 이를 41사로 나누어 각사에 사장 1인씩을 두며 이를 290촌으로 나누어 각촌에 촌장 1명씩을 두었다.(74') 또 중요지점에 헌병분견소를 설치하고 이에 한국 경찰관을 배치시켰다. 신흥평 국자가·두도만·호천포·우적동·조양천·

---

(74) 篠田治策 저 전개서 P.250

(74') 篠田治策 저 間島問題の回顧 P.29

백산학회 간 백산학보 제6호 pp.195 - 199 및 P.209

및 북사평 등 14개소에도 본건소를 두었다. (75)

이와 같이 일청간에는 간도문제를 두고 다투다가 1906년 8월 부터 일본공사 伊集院彦吉과 중국대표 梁敦彥 사이에 협상이 벌어 졌다.

## 제2절 일 중 양국의 주장

### 1. 일본의 주장

일본이 간도가 한국 영토라고 주장한 요지는 다음과 같다.

(1) 장백산, 백두산 일대는 본래 한·중 양국의 발상지로서 중국영토인지 한국영토인지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에 중국은 북극등을 파견하여 한국대표와 함께 분수령상에 비를 세워 후일의 증거로 삼으려 했으므로 그 비가 정제석인 것은 각종의 증거와 함께 명백하다.

(2) 백두산 분수령에 비를 세운 곳에 실제로 동쪽으로 흐르는 一水가 있어 이를 토문강이라 한다. 이 河水는 碑面의 문자와 부합한다. 중국은 이 실제의 지형을 인정하지 않고 막연히 두만과 토문이 동일한 강이라 함은 편견이다.

(3) 강희 50년의 上諭는 중국의 독단에 불과하다. 중국의 독단은 한국을 구속하지 못한다. 중국은 강희 50년 부터 光緒

---

(75) 王芸生 저 六十年来 中國与 日本 제5권 P.133  
신기석 전개논문 P.69



수년에 이르기까지 약 2백년간에 걸쳐 두 나라가 토문강을 지켜 국경분쟁이 없었기 때문에 독단이 아니라고 하나 소위 2백년간 무사하였다는 함은 天聰의 和約(필자 주 1636년의 화약)을 존중한 결과이지 간도가 중국영토였기 때문이 아니다. 두만강은 대체로 동북으로 흐르며 동남으로 흐르는 부분은 강구의 소부분에 지나지 않는데 상유에 「향동남류입해」(向東南流入海)란 것은 사실과 다르며 「西南為朝鮮 東北為中國」이란 것은 무의미하다.

(4) 광서 8년 8월 12일의 한국왕 睿文에 「폐방은 중국과 중의 일가로…… 대소 兩界는 원래 천한의 토문강이며 길림과 威鏡平安에 속한다」고 한 말을 원용하여 중국은 한국도 이미 토문과 두만을 동일한 강으로 인정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두만강은 평안도에 속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므로 토문이라는 것은 지리상 마땅히 토문강입이 맞는 것이며 토문과 두만이 동일한 강이 아니라는 반증이다.

(5) 광서 11년에 한국왕의 공문에 토문강 이남은 한국의 땅이나 변민의 소요가 중국에 시끄러울 것을 생각하여 토문 이남을 비워서 백성들의 출입을 금지하였다고 하였음은 한국이 그 때부터 간도를 영토로서 주장하여 온 증거다.

(6) 중국은 광서 11년(필자 주 1885)의 지도로써 토문은 두만이라고 주장하나 그 지도에는 두만강으로써 경계를 한다는 기록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 때 한국대표 이중하가 토문경계설을 강경하게 주장한 것은 광서 12년의 공문과 을유문답기에 명백하니 그 지도로서 토문은 두만이란 논거로 할 아무런 이유도 없다.

(7) 토문이란 명칭이 옛부터 있었으며 두만 또는 도문과 같은 강이 아님은 명국의 정통년간에 편찬하고 가칭년간에 증수한 淸遠誌에도 보인다. 거기에는 토문은 수원을 장백산 북쪽의 송산에서 발하여 송화강에 들어 간다고 기록하고 있다. 그 책에 수록된 지도의 토문강 위치는 한국이 여태껏 주장하여 온 토문강과 부합한다. 이것이 토문이란 명칭이 옛날부터 있는 것이며 두만 또는 도문과 관계 없다는 증거인 것이다. 한국의 주장은 중국의 고적에 맞추어 보아도 틀림이 없다.

(8) (가) 李重夏는 광서 11년 담판 때 토문강설을 주장하여 무산 이하의 두만강으로써 국경이라고 인정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11년의 총리아문의 주문은 아무런 근거 없는 것이다.

(나) 광서 13년의 담판은 완전히 국경을 결정하는데까지 이르지 않았고 중도에서 그쳤기 때문에 양국이 어떠한 제안을 하였거나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것이다.

(9) 광서 29년에 한국정부는 이범윤을 간도관리사로서 그곳에 파견하여 다시 국경 담판을 제안하였다. 善後章程 제1조 및 경성주재 허공사의 광서 30년 6월 2일의 공문에 의하면 중국의 뜻은 단지 紅土·石乙의 二水를 조사하려는 데 있지 않음이 명백하다. 또 許公使의 동년 1월 29일의 공문에 의하면 광서 13년의 담판이 아무런 결론이 없었기 때문에 여러가지 사건이 발생하니 곧 대표를 파견하여 다시 담판하기 바란다는 기록이 있다. 이 내용은 모두 중국이 간도 담판을 다시 할 의사가 있었음을 증명한다. 그리고 홍토·석을의 二水에 관해서는 그 공문에 아무

린 언급이 없다. 즉 전문의 의의로 보던 홍토·석울의 조사가 끝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다. 또 善後章程 제1조의 의의도 배두산 정계비로써 장래 감계의 기초로 할 것을 명백히 하였으며 중국은 여러가지로 변명하여 13년의 감계를 들어 무산 이하는 이미 국경이 결정된 것 처럼 주장하나 결코 승인할 수 없다.

(10) 한국의 이씨조선은 경원의 대안지방에서 발상한 것은 역사상의 사실이다. 뒤에 차차 남하하였다 할지라도 그 강북 일대는 이씨의 판도에 들어 간 것은 명백하다. 중국이 개국하여 女真부락을 정복한 바 있으나 그 목적은 그 인민을 홍경지방으로 이동시키려는데 불과했고 그 토지는 버리고 돌보지 않았음은 역사에 명백하다. 그러므로 중국 정부가 이 征服으로써 두만강 북쪽이 모두 그 판도안에 들어 왔다고 함은 부당하다.

(11) 훈춘·영고탑 등은 중국에서 군관을 두기는 했으나 두만강 북쪽의 지역이 이 때문에 그 주권범위안에 들어 갔다고 할 수 없다. 그 보다 이전에 중국이 훈춘 부근에 토지를 조사하려 할 때 이미 갈아하 북쪽에 한국인이 집단 거주하고 있었고 함경도 관찰사로부터 지권을 받아 官報에 등기되어 있음을 보고 놀란적이 있다. 이것으로 보아도 강북 일대가 옛날부터 개척되지 않은 상태로 있었고 중국 주권하에 있지 않았음이 명백하다.

(12) 영고탑의 관병을 두만강안에 파견하여 屯所를 설립한 것이나, 안도립타목노의 房屋를 파괴했을 때 모두 중국이 철거시킨 것은 한국의 항의에 의한 것이다. 이것은 중국이 한국의 권리를 얼마나 중시하였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13) 광서 9년에 회령부사로 부터 돈화현에 流民이 월간하는 地名을 조사 보고하기를 요청하였을 때 그 회답은 「연안 일대는 중국이 과거 부터 지명을 부치지 못하였다. 한민의 기록에 의하면 「무슨 동리」라고 되어 있었다. 이것은 중국이 스스로 그 때 청국식 지명이 없었다는 것을 표시하는 것이며 한국은 이미 지명을 다 부쳐 놓았었다는 증거다. 즉 간토에 중국은 지명도 부치지 않았으며 통치권도 미치지 못 하였다는 것이 명백하다. (76)

## 2. 중국의 주장

이상과 같은 일본의 주장에 대하여 중국은 반박문을 조여상으로 하여금 작성케 하여 일본에 보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강희의 諭旨 및 중·한의 고전에 경계 미정이라는 글이 없다. 그리고 강희 50년의 유지와 목극등의 咨文에는 查辺의 기사가 있어도 이 기록은 결코 경계 확정이라고 할 수 없다.

(2) 조선과 경원중 한 사람은 接伴이라고 했고 또 한 사람은 관찰이라 하여 강제외 권한을 가진 것이 아니었으므로 會同定界 했을리가 없다. 승문원 古典에 의하면 목극등과 동행하여 등산한 조선관리는 통역인 수인 뿐이고 다른 관리는 없었으니 조선관리의

(76) 篠田治策 백두산정계비 pp.254 ~ 259

王芸生 전 계서 pp.147 ~ 177

작자미상 관북여지도, 백산학보 제6호, 1969, pp.159~178.

외동정계설은 성립되지 않는다.

(3) 양국 경계는 既定의 문제로서 이 때 비로소 확정된 것이 아니다. 비문의 「서위압록 동위토문」이란 말은 실로 중국주장의 근거다.

(4) 일본이 주장하는 토문강은 송화강 지류의 황하송강자다. 장백산의 물은 그 서쪽에서 발원하는 것은 모두 서류하여 압록강으로 들어가고 동쪽에서 발원하는 것은 모두 동류하여 도문강에 들어가고 북쪽에서 발원하는 것은 모두 북류하여 송화강에 들어간다. 그런데 황화송강자는 송화강의 일지류인 고로 그 발원은 백두산 북쪽의 동쪽편에 있다 할지라도 그 흐르는 방향은 북쪽이다. 비문의 「서위압록 동위토문」이란 말과 위치가 다르다.

(5) 상유중의 내용은 두만강 방향만을 논하면 항의문과 같으나 만주와 조선의 대체를 보면 「西為朝鮮 東北為中國」이란 것이 조금도 잘 못된 점이 없다. 상유의 「自長白東辺流出」은 그 발원처를 말하는 것이며 「向東南流入於海」는 하류의 入海處를 말하는 것이다.

(6) 조선의 각종 고도지는 모두 두만강으로써 경계로 하고 있다. 조선왕의 「大小兩界原有天限土門江」이란 글은 이것과 부합된다. 고로 토문이란 두만이다.

(7) 광서 11년의 조선공문에 관하여

(가) 그 공문은 광서 11년 勸界 이전의 爭論인 고로 감계 이후에는 이 쟁론이 일소되어 다시 다룰 필요가 없다.

(나) 그 공문 내용에는 두가지 모순이 있다. 즉 「土門江」

以南禁民入居」는 도문강북의 중국封禁地임을 승인한 것이다. 즉 「土門江以南為韓國之地」라고 하는 것이 모순의 첫째다. 「근년邊禁의 解弛가 지방관의 책임」이란 것은 한국민의 冒禁越壘의 잘못을 자인하는 것이나 또 「以隣邦之民 居隣邦之地 何不可之有」라고 한 것은 모순의 둘째다.

(8) 이중하가 광서 11년에 도문이 두만과 동일한 강이 아님을 주장하지 않았음은 도문강이 길림 경계임이 틀림없기 때문이고 회감도에 도문의 界址를 명기하였음은 이 때문이다. 광서 13년의 담판때에 무산 이하의 도문강 하류물 조사하지 않았음은 11년 담판의 결과였다. 그 때 이중하가 두만강이 경계임을 인정한 것이 명백하며 會印圖는 실로 이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며 두만강을 국경으로 한다는 기록이 없다고 할 수 없다.

(9) 명대에는 송화강을 혼동강이라고 하였고 토문이라 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全遼誌에 있는 토문은 소위 명나라 嘉正년간에 장백산 북쪽의 한 지역이며 중한의 경계를 이루는 토문이 아니다. 환언하면 全遼誌의 토문은 오늘 날 한국이 주장하는 토문강이 아니다. 토문·두만·도문이 동일한 강이며 국경임을 나타내는 기록은 많다. (통문관지·성경통지·수도제강·조선도지·회전도설·조선인自著 지리소식·일본참모본부 만주지지·동아동문회 만주지지·守田 대좌만주지지)

(10) 중국정부는 광서 13년의 담판때 이중하가 말한 바와, 광서 11년의 김영식의 土門事宜에서 말한 바에 따라, 조선의 군신이 도문과 두만이 동일하다는 것과 도문이 국경임을 인정하고 있

나는 사실을 알았으며 총리아문의 주보는 이중하와 조선정부의 언  
론에 근거하고 있으므로 근거없는 것이 아니다.

(11) 광서 13년 담판이 성안되었다는 것은 ①양국의 會勘問答  
記에 있는 바이고 ②조선감계사의 조회에 의하고 ③광서 13년의  
조선왕 睿文과 동 14년의 중국정부에 보낸 자문에 의할 뿐만  
아니라 同案은 조선 군신이 자유로히 결정하였으므로 유효한 것이  
다.

(12) 가. 허공사의 공문에 쓰여진 간도는 두만강의 假江地로서  
오늘날 일본정부가 칭하는 두만강 북쪽의 지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그 증거는 광서 29년 이범윤이 越壘局에 보낸 공문중  
에 가강지를 칭하여 간도라고 한 예가 있다. 内田公使의 말에  
「 圖門江 間島介在中韓交界 」라고 한 것과 일치한다. 선후장정에 도  
고간도의 가강지임을 명기하고 있다. 그러므로 간도는 곧 가강지  
이고 가강지 이외에 간도가 없다. 곧 그 공문은 오히려 일본정  
부가 주장하는 두만강이 양국 국경이 아니라는 설을 반증하기에  
충분하다.

(13) 「 鴨綠 圖門二江次為天然界限 乃以光緒十五年案 遲久未決 」  
이라는 소위 未決은 도문강원의 小流의 미결을 말하는 것이며  
「 會同重勘 」의 중감은 紅土 石乙 2수의 강원을 중감한다는 뜻이  
다.

(14) 일본정부는 무슨 근거로서 선후장정이 두만강으로써 국경이  
결정되었다는 것을 부인하며 중·한 양국은 언제 도문강이 아닌  
다른 하류로서 국경으로 하려고 대표를 파견하여 조사한 일이 있

다고 생각하는가?

(15) 이씨조선은 고려의 전주에서 일어나서 무조가 잠시 알동에 천거한 것은 사실이다. 알동은 지금의 「포세트」로서 간도와는 전연 다른 곳이다. 또 도문강 북쪽의 훈춘은 元代의 중국영토이며 명대에는 조선과 강으로써 국경으로 정한 사실이 있다. 청조의 기원지는 악다리 곧 지금의 둔화현으로서 간도와는 2백여리 밖에 떨어지지 않았고 간도가 중국의 영토임은 틀림없는 일이다. 청조가 와이객 등지를 정복한 것은 갑국이 울국을 강제 병합한 것으로서 간도가 중국영토임은 의심의 여지가 없고 그 정복의 목적인 인민을 얻기 위한 것이고 토지를 점령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는 것은 역설이다.

(16) 興京以東 도문강 이북을 전부 봉금지역으로 하고 11조의 盟誥를 보드라도 길림남부에 封禁한 사실이 많다.

훈춘과 영고탑에 군관을 주둔시켜 매년 군정을 베풀고 도문강 북쪽을 旗民들이 수렵장으로 한 사실은 고전에 기록되어 있으므로 그 지방이 중국의 주권에 속하였음은 명백하다.

(17) 한민의 월간은 동치 9년에 있는 북한이 대흥년 이후이며 종성부사의 조희문에 「길림과 조선은 원래 도문강수로서 경계로 했다」고 하였음을 보아도 대흥년 이전에는 한국인의 월간이 없었음을 알 수 있으며 도문강으로서 국경으로 하여 중국이 엄격히 봉금을 해왔다.

(18) 일본이 보낸 공문에서 말한 한국판리가 지권을 발급하였다는 것은 전문에 불과하므로 믿을 수 없다.



(19) 두만강 북쪽이 청구영토라는 것은 명백하며 강변에 屯莊을 설치하여 강을 건너는 것을 금지한 것은 우리 국경을 지키기 위한 것이다. 이것은 주권행사를 하였다는 증거다. 沿江 가까이 거주하는 자가 있으면 한국에서 수시로 관리를 파견하여 통보한 것은 먼저 조희에서 밝힌 바와 같으므로 한국의 항의라고 볼 수 없다. 승덕 4년 이래로 한국 6鎭의 관리가 위반한 사건이 26건이나 되며 만약 두나라 인민이 접근하면 피차 교섭의 안전이 더욱 많아지고 한국이 번거롭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다. 이것은 속방인을 구휼하기 위한 것이지 한국의 권리를 존중한 것이 아니다.

(20) 八旗通志와 혼춘책보에 봉금체포의 증거로서 기재된 것은 포이합도하 이북에 많이 있다. 이것을 보아도 어찌 漢名이 없었다고 하겠는가? 즉 간도가 중국의 封禁探捕의 증거였다는 것을 추단할 수 있으며 그래서 주권이 미쳤다고 할 수 있다. (77)

일본은 역사적 사실과 한국이 주장해 오던 이론에 입각하여 주장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중국은 토문강은 곧 두만강이라고 주장하는 동시에 백두산 정계비 자체를 부인하고 1887년의 정해감계담판에서 무산 이하의 두만강으로서 국경으로 정하였음은 기정사실인 것처럼 주장하였다.

중일 두 나라에서도 간도를 중심한 논의가 계속될 뿐 회의는 공전을 거듭하였다.

---

(77) 篠田治策 전제서 pp.259 ~ 264

### 제 3 절 간도협약의 체결

이상과 같이 일본은 간도가 한국소유라는 것을 주장하여 오다가 1909년 2월 6일에 중국에 대하여 「東三省六案」을 제시하였다.

이 동삼성 6안이라는 것은

- (1) 滿鐵의 병행선인 신범(신민둔-법고문) 철도 부설권 문제
- (2) 대식교-영구간의 지선 부설권 문제
- (3) 경봉철도를 봉천성 밑까지 연장하는 문제
- (4) 무순과 연대 탄광의 채굴권 문제
- (5) 안봉선 연안의 광무권 문제
- (6) 간도 귀속문제 등인 것이다.

이것은 일본이 일로전쟁 후에 대륙정책이란 이름 밑에 만주침략을 위해 제기한 것이었다.

1909년 2월 10일에 일본공사 伊集院彦吉과 중국의 외부시랑 梁敦彥 사이에 이 동삼성 6안을 대상에 놓고 회담을 하게 되었다. 이 양자간의 회담 내용을 살펴 보면 일본이 어떠한 내막으로써 간도 문제를 다루었는가를 알 수 있다.

제 1차 회담시에 중국 대표가 「나 개인 의견으로서 묻는데 중국이 무순 탄광 문제에 관하여 평화적으로 상의에 응할 것 같으면 귀국은 연길(간도)을 중국 영토로 인정할 것인가?」라고 한 데 대하여 일본대표는 「중국이 무순 탄광 문제에서 양보한다면 우리나라도 연길문제에 대하여 양보할 것이다. 그러나 영토권의 귀속 문제에 관하여서는 근본문제이므로 일본은 신중히 고려할 것

이며 일시에 즉결할 수는 없다」(78) 라고 조심스런 대화가 교환되었다.

이것을 보면 일본은 대륙에의 침략을 극력 추진하기 위하여 간도문제를 동삼성 6안중 다른 5안과 교환조건으로 흥정하려 한 의도가 명백히 나타나는 것이다.

제 1차 담판의 결과를 伊集院 공사가 일본 정부에 보고하였드니 일본 정부는 다시 훈령을 내려 중국이 다른 5안에 양보하거던 일본도 간도영유권을 포기하도록 하였다.

1909년 2월 17일 부터 개시된 제 2차 회담에서 일본 정부는 「어제 본국정부로 부터의 회전에 중국이 다른 문제에 융통성 있는 방법을 강구할 것 같으면 일본은 간도지방에 있어서 중국의 영토권을 인정하는 것이라 하였으니 귀대신은 이 뜻을 잘 이해하고 상의하기를 바란다」고 하였다. 이에 중국 대표는 「간도지방은 원래 중국영토인데…… 이제 귀국이 중국영토임을 인정하니 심히 반갑다」(79) 고 대답하였다.

그리고 다른 광업권문제 탄광권문제 및 철도권 문제를 논의하였는데 중국이 이 문제들에 대하여 양보를 하지 않게 되었다. 일본 대표는 이에 격분하여 「일본이 간도에 대한 중국의 영토권을 인정한 것은 큰 양보다. 그런데 귀대신은 다른 여러 문제에 대

---

(78) 王堯生 저 전제서 제 2 절 양돈언어 이집원언길 담판  
pp.222 ~ 234)

(79) 王堯生 저 전제서 제 2 절 일본승인연길제 중국영토 p.225

하여 조금도 양보를 하지 아니하니 대단히 곤란하다」고 하였다. 이에 중국 대표는 「우리는 간도문제를 중요시하고 있다. 귀정부가 영토권을 인정하였으니 한국인 재판권마저 중국에 귀속함을 인정하면 완전하다. 이 문제가 잘 해결되면 그 밖의 문제에 대하여서는 우리 정부와 협의하여 양보하도록 해 보겠다」<sup>(80)</sup>고 대답하였다.

1909년 3월 1일부터 제3차 회담이 시작되었다. 이 때 일본 대표는 「간도의 영유권에 대하여 일본이 큰 양보를 한 것이나 간도에 있는 한국인의 재판권은 일본이 소유하여야 한다」고 하고 이어서 「……중국이 이 재판권을 양보하지 아니하면 이미 양보한 영토권 문제를 철회하겠다」고 하였다. 이에 중국대표는 「귀국은 큰 양보라고 하지만은 원래 영토권은 중국에 속한 것인데 귀국이 터무니 없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다…… 영토권을 인정하면서 거기에 경찰서를 설립하고 재판권을 소유한다면 중국의 통치권을 침해하는 것이 되니 허락할 수 없다」고 하였다. 그러나 일본은 그 경찰은 사법경찰이지 결코 중국의 행정권을 침해하기 위한 그런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였다.<sup>(81)</sup>

이와 같이 일본대표 伊集院彦吉 과 중국대표 梁敦彥 사이에 세차례에 걸친 회담을 통하여 중국은 일본에 간도문제만 유리하게 처리되면 다른 문제를 양보하기로 하여 대체적인 합의를 보게 되었

---

(80) 王芸生 저 전계서 P.228

(81) 王芸生 저 전계서 일본요구연결설영사 급 재판경찰권 P.229

다.

1909년 8월 17일에 드디어 중국정부는 일본에 간도에 있는 한국인의 재판권을 인정하고 영사관과 경찰서의 설치도 인정하는데 이르렀다. 물론 동삼성 6안중 간도문제를 제외한 다른 5안에 관하여서도 중국은 일본에 양보하게 되었다.

그래서 1909년 9월 4일에 伊集院彦吉과 梁敦彥 사이에 7개조로 된 도문강한중계무조관(일명 간도협약)이 체결되었다. 그 내용중 간도 귀속문제에 관한 조항을 보면 그 제1조에 「일·중양국정부는 도문강을 중·한국경으로 하며 강원지방에서는 정계비를 기점으로 하여 석을수로써 약국의 경계로 할 것을 약정한다」라고 규정하였다. (82) 이 이외로 상부지開設, 일본영사관의 설치 및 한인의 토지, 가옥소유권 등을 규정하였다. 동시에 일본이 간도문제와 동시에 제시한 다른 동삼성 5안은 모두가 중국의 양보로써 일본이 이권을 탈취해 갔다. 환언하면 일본이 간도領有權과 다른 5건을 교환한 것이다.

---

(82) 국회도서관 편 구한말조약취찬 중권 P.263

## 제 6 장 국제법적고찰

### 제 1 절 간도협약의 불법성문제

간도협약은 한국이 일본에 병합되기 1년전인 1909년에 체결되어 그 제 1조에서 중국영토로 귀속함을 규정하였다. 그러나 이 간도협약은 여러면에서 적법성을 띠고 있지 못하는데 그 중요한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로 한중간의 국경분쟁을 중일간에서 해결하였다는 점이다. 국경분쟁을 해결하려면 당사국간에서 어떠한 형태이건 직접 해결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국제사법재판소에서 해결하든지 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 간도협약은 전자도 아니고 후자도 아닌 방법에 의하여 일단 종결시킨 점이 문제가 되는 것이다.

이 간도문제의 해결에 있어서 일본이 참여하게 된때 대하여는 다음의 경우를 생각할 수 있다. 즉 1905년 11월 17일에 체결한 소위 을사보호조약에 근거한다는 것이다. 이 조약으로 인하여 일본이 탈취해 간 외교권의 성격이 어떠한 것인가가 문제된다.

이 조약 제 2조에 「……금후에 일본정부의 중개를 거치지 않고 한국은 국제적 성질을 가지는 어떠한 조약이나 약속을 하지 못한다」<sup>(83)</sup>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어떠한 조약이나 약속을 할 권리는 한국 정부가 갖되 일본의 중개를 거쳐야 한다는 것이

---

(83) 국회도서관 편 전계서 P.77

다. 일본이 한국을 병합하기 위하여 한국의 외교권을 제한한 것은 정치적 차원에서의 해석이다. 그러나 이 조항이 법적차원에서 한국의 외교권을 탈취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는 없다. 다만 한국의 외교권에 일본이 상당한 제약을 가한 것만은 사실이다.

이 뿐만 아니라 동조약 제1조에 「일본정부는 재東京외무성을 경유하여 금후에 한국이 외국에 대하는 관계 및 사무를 감리·지휘할 것이다」<sup>(84)</sup>고 규정하므로써 한국의 구체적인 외교교섭권마저 탈취해 갔다. 그러나 이 외교권의 감리 및 지휘는 일본의 감리나 지휘를 받으면서도 어디까지나 한국이 외교권을 갖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 환언하면 이러한 규정으로 일본이 외교권을 스스로 행사한다거나 감리와 지휘를 떠나서 한국의 영토를 제3국에 넘겨 주는 것 같은 영토처분권까지 가진 것이라고 해석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간도협약을 통하여 간도지방을 중국의 영토로 인정해 준 사실은 일본으로서 씻을 수 없는 불법행위를 자행한 것이다.

나아가서 일본은 을사조약 제1조에서 「일본국의 외교대표자 및 영사는 외국에 있어서의 한국의 臣民 및 이익을 보호할 것」이라 했고 제2조에서 「일본국 정부는 한국과 타국간에 현존하는 조약의 실행을 완수하는 임무에 당한다」<sup>(85)</sup>고 규정하였다.

이러한 내용에도 불구하고 간도를 중국에 넘겨 주므로써 일본은

---

(84) 국회도서관 편 전계서 P.77

(85) 동 상

간도에 있는 한국인의 이익을 포기하고 말았다. 그리고 1712년  
에 한중간에 체결한 백두산정계조약을 실행하지 않고 휴지화 해  
버렸다.

1904년 8월 22일에 체결한 한일외국인고문 용병에 관한 협정  
서와 동년 12월 2일에 체결한 외교고문 용병협약에서도 외교고문  
은 「외교에 관한 사무에 의견을 개진하는 것」과 「외교안전의 심  
의입안」하는 데 그치고 있다.(86)

다만 일본은 이 간도협약을 통하여 대륙을 침략하기 위한 교환  
조건으로서 분쟁지역인 간도를 이용한 것인데 한국은 이를 도저히  
승인할 수 없는 것이다.

둘째로 중국과 일본이 간도협약을 체결한 1909년에 한국으로서  
는 이 조약이 불법적이며 한국에 지대한 손해를 끼치는 사실이라  
고 판단하면서도 일본이나 중국에 항의 또는 반대를 할만한 처지  
에 있지 못하였다. 그것은 일본이 한국의 각 분야에 고문정치를  
하면서 경찰권과 외교권, 심지어 사법권까지 탈취해 간 뒤였기 때  
문이다. 그러므로 이 간도협약은 한국이 동의하지 않고 반대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고 따라서 동 조약은 한국을 구속할 수 없  
는 것이다.

셋째로 한국은 간도협약을 체결한 일본측 전권대표를 전권대표로  
서 인정한 사실이 없다. 이 때 일본은 한국영토를 처분하면서  
伊集院彦吉이란 자를 전권에 임명했고 이 伊集院이 간도협약에 조

---

(86) 국회도서관 편 전제서 P.77  
의문출판사 편 중인경제문제 1963.P.7



인하였는데 이 伊集院은 한국정부로부터 전면대표로서 동의받을만한 아무런 절차도 없이 조인하고 만 것이다. 두나라 사이에서 제 3국의 영토를 당사국의 관여나 동의 없이 처분한 이 간도협약은 완전히 불법적인 것이다.

## 제 2 절 간도협약의 무효

간도협약이 불법이라는 것을 전절에서 주장하였거니와 여러 국제적인 선언이나 조약에서도 이미 간도협약이 무효란 것이 규명되어 있다.

### 1. 카이로선언 및 포츠담 선언

1943년 11월 27일에 미영중 3개국 수뇌가 카이로에서 다음과 같은 선언을 발표하였다. 이 선언에서는 「미영중 3대국의 목적은..... 그리고 만주·대만·펑호 제도등 일본국이 중국인으로 부터 盜取한 모든 지역을 중국에 반환하는데 있다. 일본국은 폭력 및 강욕에 의하여 掠取한 기타 모든 지역으로 부터 구축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1945년 7월 26일의 미영중(동년 8월 8일에 소도 가입) 3개국은 포츠담 선언을 발표하였다. 이 포츠담 선언의 제 8항에서 「카이로 선언의 조항은 이행되어야 하며 또 일본국의 주권은 본주·북해도·구주 및 사쿠 그리고 우리들이 결정하는 제 소도에 국한된다」라고 하고 있다.

이 카이로 선언이나 포츠담 선언은 참가국만에 구속력을 가진다고 하겠으나 일본은 1945년 8월 14일에 무조건 항복함으로써 이 선언을 수락하였고 또 동년 9월 2일의 항복문서에서 이 선언들을 수락한다고 명기하였기 때문에 일본도 이 두 선언에 구속을 받게 된 것이다.

카이로 선언문 가운데의 「만주 ……등 일본이 중국인으로 부터 도취한 모든 지역을 중국에 반환함」을 연합국의 목적으로 삼았는데 이것은 1895년의 중일전쟁 이후에 일본이 중국 대륙으로 제국주의적 침략정책을 써서 탈취한 모든 것임이 명백하다. 그리고 이 선언문 가운데 계속하여 「…… 일본국은 폭력 및 강욕에 의하여 약취한 기타 모든 지역으로 부터 구축」된다고 하였다. 도취한 지역을 중국에 반환할 뿐만 아니라 폭력과 강욕으로 약취한 지역에서 구축됨으로써 일본은 1895년 이전의 상태로 되돌아 가지 않으면 안된다.

그렇다면 일본이 폭력과 강욕에 의하여 탈취한 모든 중국의 지역을 내어 놓을 때는 이 모든 지역을 탈취하기 위하여 제물로 바친 간도도 1909년 이전의 상태로 반환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당사국들은 카이로 선언과 포츠담 선언에 위반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 2. 산·프란시스코 조약과 중일평화조약에의 위반

일본은 1951년 9월 8일에 연합국과 산·프란시스코에서 평화조약을 체결하였고 1952년 4월 28일에 중국과도 평화조약을

체결하여 전쟁상태를 종결시켰다. 산·프란시스코 조약 제 10 조와 중일평화조약 제 5 조에는 「……일본은 1901년 9월 7일에 북경에서 체결한 최종의정서와 모든 부속서·각서 및 문서의 규정으로 인하여 획득한 모든 이득과 특권을 포함하는 중국에 있어서의 특수한 권리 및 이익을 포기함에 동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산·프란시스코 대일평화조약 제 10 조와 중일평화조약 제 5 조에 규정한 바에 따라, 일본은 1895년의 중일전쟁 이후부터 1945년의 종전까지 사이에 탈취한 중국의 모든 영토와 특권 및 이익을 중국정부에 반환하지 않으면 안 되었고 또 사실상으로 반환하였다.

그리고 중일평화조약 제 4 조에는 중일 양국은 전쟁의 결과로서 1941년 12월 9일 이전에 체결한 모든 조약·협약 및 협정을 무효 (null and void)로 한다」고 규정하였다. 이 「1941년 12월 9일 이전」이란 표현은 일본이 중국에 대하여 침략적 행위를 한 때로부터 시작하여 태평양대전이 발발한 때까지의 전기간을 통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기간에 체결한 모든 「조약·협약 및 협정」을 일본은 무효로 할 것에 동의하도록 강요되어 있다. 이 기간에 체결한 모든 조약은 3대국이 카이로에서 밝힌 바, 폭력과 강욕에 의하여 탈취한 이권이며 특권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이 조항을 일본에게 강요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간도협약도 1941년 12월 9일 이전에 체결한 중일간의 조약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무효 (null and void)로 되어야

한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간도협약은 일본이 중국에 대한 모든 특권과 이권을 폭력과 강욕으로 탈취하기 위한 하나의 세물로서 산출한 조약이기 때문에 당연히 일본이 간도귀속문제에 뛰어들기 이전의 상태로 복귀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간도문제가 한중 국경문제로 아직까지 재연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로서 소위 1909년의 간도협약이 그대로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할 수는 없는 것이다. 간도협약이 유효하다고 하려면 산·프란시스코 대일 평화조약 제10조와 중일 평화조약 제4조 및 제5조에 위반되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중국이 이 간도문제를 스스로 1909년 이전의 상태로 복귀시키지 않으면 일본에 대하여 적용시킨 똑 같은 원리를 한국에는 적용시키지 아니하고 오히려 외면하는 결과가 되며 연합국은 대일 평화조약 제10조를 불이행하는 것이 되는 것이다.

### 제3절 토둔강선과 백다혼선의 비교

1914년에 영국과 西以 사이에서 체결한 英藏 심라조약 (Simla Treaty)은 중일 간도협약과 유사한 점이 있다. 이 심라조약은 인도를 병합한 영국과 중국의 일속지인 서장사이에서 중국의 영토 일부를 영국(인도)에 넘겨 주도록 규정하였다. 침략국가와 피침략국가 사이에서 제3국의 영토를 그 제3국의 관여나 동의 없이 처분한 내용이 한중 국경분쟁의 요소와 근사하다.

1959년 1월 23일에 주은래가 베루에게 보낸 서한에서 이 심

라조약은 불법적인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는데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맥마혼 선은 중국의 서장지방을 침략하려는 영국의 산물이었고 또한 우리는 그것이 합법적인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리고 주은래는 이어서 「우리는 맥마혼 선을 규정한 서장대표인 롱·첸·사트라 (Long Chen Shatra)를 전권대표로 인정해 준 사실이 없다」<sup>(87)</sup>고 하였다.

이 맥마혼 (McMahon)선과 토문강은 근사한 사례로 들 수 있다. 영국과 서장 사이에서 책정한 국경선인 맥마혼 선은 중국이 생각하는 中印간의 관례적인 국경선 보다 훨씬 중국 쪽으로 들어가 있다는 점과, 일본과 중국 사이에서 책정한 국경선인 두만강선은 한국이 생각하는 토문강선 보다 훨씬 한국 쪽으로 들어와 있다는 점이 그것이다. 단지 영국은 침략정책의 일환으로 맥마혼 선을 외부로 연장시키며 반하여 일본은 침략정책의 일환으로 한중 국경선을 내부로 축소시켰다는 차이가 있을 뿐이다. 즉 중공이 오늘날에 와서 인도에 대하여 주장하는 상기 제점은 한국이 중국에 대하여 주장할 수 있는 바로 그 理論인 것이라고 한다면 상당히 흥미 있는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

(87) Francis Watson, *The Frontiers of China*, Fredrick A. Praeger, New York, 1966,

국회도서관보 제 5호 강상운 논문 중인 국경분쟁의 역사적 고찰 P.9

#### 제 4 절 간도 귀속문제와 분쟁의 再起 문제

이 간도문제를 정당하게 해결하기 위하여서는 두가지의 방법이 있을 수 있다. 그 하나는 전절에서 말한 바와 같이 간도협약은 이미 무효가 되었으므로 간도협약 체결이전의 분쟁상태로 회복시켜서 한중이 직접 귀속문제를 다루어야 하는 것이다. 다른 한 방법은 제 6 절에서 논급하겠다.

일본은 간도의 영토권에 대하여서는 제 3 국이었으므로 이 간도지역이 어떻게 처리되었던 간에 결과적으로 일본에 유리해지기만 하면 행동을 취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일본이 전력을 기우려 만주와 중국대륙을 향해 침략해 들어 갈 때 어떻게 하면 광활한 만주를 병합할 수 있고 중국에 침입할 수 있을 것인가가 중요한 문제였지 협소한 일지역인 간도가 그렇게 욕심을 일으키게 하지는 않았다. 더구나 간도를 희생시킨다면 3 개의 철도선 부설권과 3 개의 광산채굴권을 통한 전만주가 일본에서 병합될 직전에 있었지 않은가? 이와 같은 유리한 협상을 눈 앞에 놓은 일본이 간도를 중요시 않은 것은 쉽사리 해석된다.

만일에 간도가 일본의 불가분의 영토였다면 그 당시 일본이 그렇게 쉽사리 해결하지 않았으리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그것은 일본이 오늘 날 유구·화태·천도 열도 등지에서 심각한 영토분쟁을 일으키고 있는 사실을 보아도 잘 알 수 있다.

하여간 간도협약은 이미 무효가 되었으므로 우리는 간도 귀속문제를 간도 협약에서는 구할 수 없고 1909년 이전의 영토 귀속

에 관한 분쟁이 있던 그 원상 상태로 회복시키는 동시에 한중 두 나라 사이에서 새로이 엄격한 협상 끝에 정당하게 해결시켜야 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바이다.

### 제 5 절 백두산 정계비의 합법성문제

전절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간도협약은 이미 간도귀속문제를 규율할만한 아무런 근거도 없다. 오로지 간도귀속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거는 1712년에 한중간에서 세운 백두산정계비문 뿐이다.

간도의 귀속문제를 결정하기 위한 역사상의 근거는 이 백두산정계비를 제외하면 아무데서도 구할 수 없다. 중국은 1887년에 한중 두 나라가 정식으로 대표를 파견하여 담판케 한 정해감계담판에서 茂山 이하의 두만강이 국경선으로서 확정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것은 사실을 의곡하고 있는 것이다. 즉 정해감계담판시에 한국대표는 두만강 상류의 紅土水로서 국경선으로 하고 중국대표는 두만강 상류의 石乙水로서 국경선으로 하자고 논쟁한 사실이 있다. 이 사실을 두고 중국은 한국대표 이중하가 두만강 상류 중의 하나인 홍토수를 주장하게 된 것은 홍토수의 하류인 무산이하의 두만강을 양국의 국경 하천으로 인정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정해감계담판시에는 제 3장 제 4 절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중하 대표가 홍토수설을 주장한 것 만은 사실이다. 그 당시 중국의 한국에 대한 간섭은 날로 심해 갔으므로 이중하 대표는 불평등한 입장에서 도저히 정당한 결과를 초래할 수 없을 것을 깨달았다. 그래

서 그는 중국이 주장하는 바에 대하여 별다른 항의를 하지 않고 중국이 도저히 동의하지 않을 흥토수를 주장하였다.

이 흥토수설에 중국이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당시 회담은 유산이 되고 말았던 것이다. 그 뿐만 아니라 이 정해감계담판의 결과로서 아무런 합의문서도 남기지 않았다. 설사 그 당시 합의가 이루어지고 어떤 형태의 협정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그것은 엄연한 불평등 조약인 것이다. 그 불평등 조약은 오늘 날 중공이 소련에 대하여 과거의 모든 중소국경조약이 불평등조약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는 바로 그 논리대로 우리는 무효를 주장할 수 있을 것이다.

그 뿐만 아니라 정해감계담판 후에 한국정부는 정식으로 중국정부에게 정해감계담판은 모두 무효라고 통고하였던 것이다. (88)

그리고 역사상의 존재로서 간도문제를 규율할 유일한 근거는 앞서 말한 1712년의 백두산정계비인데 그 정계비에는 「동위토문」이라고 규정하여 송화강의 일상류인 토문강으로서 국경을 책정하였으니 간도는 당연히 한국영토인 것이다. 1885년과 1887년의 감계담판에서 오늘 날에도 중국은 토문강이란 것은 곧 두만강이지 두만강 아닌 다른 강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 뿐만 아니라 한국이 주장하는 그러한 토문강은 실제로 존재하고 있지 않다고 한다. 그러나 최근에 중국에서 발간된 서적에는 백두산정계비에 기록된 바로 그 토문강이 실제로 존재하고 있

---

(88) 본문 제 3장 제 4절 참조



는 것을 명기하고 있다. (89)

## 제 6 절 간도의 국제법적 지위

간도지역은 단군조선·고구려·발해를 통하여 한국의 영토였으나 고려시대에 와서 몇차례에 걸친 정복이 있는 이외에는 여진족의 생활근거지로 남아 있었다. 중국은 역사적으로 보아서 직접 이 지역을 통치한 적이 없으나 다만 그들의 세력범위속에 포함시켜 온 시기는 唐대와 元대 뿐이다. (90)

청대에 와서는 그 조상의 발상지가 백두산 부근이라 하여 이 지역을 중시하였지마는 주권이 실질적으로 미치지 못하는 못하였다.

17세기 초반기부터 이 지역을 무인지대로 하여 한국과의 사이에 완충지대로 하였다. 이 완충지대가 되기 전에는 울랑함(여진의 일족)족이 거주하고 있었으나 이들은 하나의 국가집단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무질서한 종족상태로서 생활하고 있었다.

그러나 완충지대가 된 후로 부터 백두산 정계비를 세운 때까지 이 지역은 국제법상 「무주지」라고 할 수는 없으나 「소속불명」의 지역이었다. 왜 그러냐 하면 완충지대로 성립시킬 때 한국과 중국의 주권이 이 지역에 실질적으로 미치지 않았으며 한중 두

---

(89) 程光裕 편 중국역사 지도집 (2) 중화문화출판사사업위원회  
민국 44년 P.85

(90) 동 상

나라는 동등히 무인지대로서 유지하려고 노력해 왔고 무인지대로 만들때 한중 두 나라는 조상의 발상지란 공통점을 들어 성립시켰기 때문이다.

그 후 1712년에 세운 백두산정계비로 인하여 토문강 이남지역인 간도가 한국영토로 형식상 확정되었다. 그 까닭은 백두산정계비문 그 자체도 하나의 엄연한 조약이기 때문이다. 이 조약문에 의거하여 한국은 1860년에 이미 한국인을 간도에 이주시켜 농사를 짓게 장려하였으며 호적부와 지적부를 만들어 실효적인 주권행사를 하였으며 황지를 개척하여 옥토로 만들었다.

중국은 1882년에 비로소 간도가 한국영토가 아니라 중국영토라고 주장하여 한국에 항의를 하게 되었다.

이에 대하여 한국은 정식으로 중국에 해명하기를 간도지역은 한국정부가 한국 농민을 이주시켜 개간했고 실질적으로 주권행사를 행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백두산정계비-조약-에도 토문강 이남의 간도가 한국 땅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하였다. 이에서 한중 두나라 사이에서는 영토분쟁이 일어난 것이다. 그러므로 이 간도는 한중간의 「소속불명」으로써 분쟁지역으로 잠재해 있는 것이 지 결코 중국영토로서 결정된 것이 아니다.

## 결 론

한중 두 나라 사이의 영토분쟁의 대상지인 완충지대로서 존재했던 약 480,000 평방키로미터에 걸친 광활한 지역이었다. 여기에다 우리 한국의 상징으로 삼고 있는 백두산마저 중국은 영토적 야심을 품고 분쟁을 야기시켜 왔던 것이다. 그러므로 한중간의 영토분쟁지역은 편의상 세개로 나눌 수 있는데 첫째로 압록강과 봉황성사이의 서간도지역이며 둘째로 백두산이며 셋째로 두만강 건너편의 북간도지역인 것이다.

그런데 이 세 지역의 귀속문제를 규율하는 유일한 조약은 1712년의 백두산정계비뿐인 것이다.

그러나 중국은 이 지역의 귀속문제를 규정한 근거로서 여러가지를 열거하고 있다.

첫째로 중국은 1711년의 광희제 諭旨로써 백두산을 중국에 편입시킨 조치라고 주장한다. 영토분쟁은 일방적선언만으로써 해결될 수 없는 것이므로 이 근거는 우리로서 수용할 수 없는 것이다.

둘째로 중국은 1887년의 정해감계담판에서 한국대표인 이중하가 두만강 상류인 홍토수와 석을수에 한하여 논의하였으므로 무산이하의 두만강은 그 때 이미 한중 양국의 국경선으로 결정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정해감계담판도 아무런 결말을 보지 못한 담판이었다. 그것은 그 당시 회담이 아무런 형식 또는 협정을 남기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후 한국정부가 정해감계담판에서 논

의한 사실은 모두 무효로 한다고 선언하였기 때문이다.

이 위에 한중 두 나라는 중일간의 간도협약을 체결할 때까지 간도문제를 대상에 놓고 분쟁을 계속하였으므로 정해감계담판에서 두만강이 국경선으로 확정되었다는 중국측 이론이 성립될 수 없다는 것은 自明한 것이다.

세계로 중국은 1909년에 중일간에서 체결한 간도협약이 간도문제를 결정지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제6장 제2절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카이로선언, 포츠담선언, 산·프란시스코대일평화조약 등으로 이 간도협약이 무효로 되었음이 증명되었다. 그러므로 한중간의 국경분쟁은 중일 간도협약에 의하여 구속될 근거가 없는 것이다. 오로지 한중국경분쟁을 규율지을 수 있는 것은 1712년의 백두산경계비에 새겨진 「동위토문 서위암록」이란 내용과 한중 양국이 취한 실제적인 주권행사인 것이다.

상기의 한중국경분쟁의 세 지역은 각기 그 처리형태가 상이하게 되어 있다.

첫째로 서간도는 현재 중국영토로 되어 있다. 둘째로 백두산은 한중 두 나라가 그 정상을 양분하여 공평히 소유하고 있다.

세계로 북간도지역은 많은 분쟁경위를 거쳐 현재 중공의 영역내에 들어 가 있으나 한민자치구로서 존재하고 있다. (91) 그러나 1909년에 체결한 간도협약에 규정한 두만강 석을수로서 현재 경계를 이루고 있는 것이 아니라 두만강 홍토수로서 경계를 이루고

---

(91) 1968년 비정년보 비정연구잡지사간, 1968. 台北, P.16

있다.

이러한 현실속에서 서언에서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지난 5월 25일에 중공은 1909년의 간도협약이 제대로 실천되고 있지 않다고 판단하여 현재의 慣行 국경선인 홍토수를 부정하고 간도협약 제1조에 규정된 석울수가 국경선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즉 중공은 석울수와 홍토수 사이의 250평방키로미터가 중국 영토로 되어야 한다고 새로이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중공은 1712년의 정계비의 근거로 백두산을 요구한다면 백두산 자체의 영유권 주장이 확실할 것이지 마는 이 정계비를 들고 나오면 북간도지역이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될테니까 이를 보유하고 이미 무효가 되어 버린 간도협약에 근거하여 영토권을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간도협약이 이미 무효가 되었다는 사실을 상기 제6장의 근거로써 주장하는 동시에 백두산정계비를 근거로 하여 간도지역의 올바른 귀속을 주장해야 한다.

간도지역은 이 백두산정계비문의 「동위토문」이란 구절 뿐만 아니라 그 지역은 역사적사실과 경제적·지리적 및 법적사실이 한국 영토임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구한말의 정권이 斜陽의 길을 밟고 있었던 관계로 그 이상 더 영유권을 주장하지 못한 채 일본의 대륙정책의 희생물로서 제공되고 만 것이다. 그러나 2차대전을 통하여 파괴된 국제질서의 중건을 위해 강대국간에서 카이로선언과 포츠담선언을 행하였고 산·프란시스코 대일평화조약 및 중일평화조약을 체결하였는데 이러한 제선언과 조약은 오늘날의 국제질서 유지를 위한 지침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이 지침이 되는 제선언과

조약에서 다행하게도 중일간도협약은 무효로 규정하였으니 이 강대국의 국제질서 회복의 신기운에 따라 우리는 잃었던 우리의 이레델타 (Irredenta) 인 간도지역을 다시 찾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경주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북간도의 범위는 백두산천지에서 출발하여 투문강과 (토퇴·석퇴 및 목책을 설치한 선도 포함) 老爺嶺 산맥 및 태평산맥 이남의 3만 134평방키로미터의 지역을 말하는 것이다. (92)

단지 이 북간도지역을 다시 찾기 위하여 우리가 1712년의 백두산정제비를 주장하게 되면 우리의 상징으로 삼고 있는 백두산이 중국영내에 들어 가게 되는 불리점이 있게 된다. 그러나 이 백두산의 영유권에 대하여 우리는 우리의 특수한 민족감정을 고려하여 도저히 중국에 넘겨 줄 수 없는 것이다. 이것은 중공이 인도에 대하여 히말라야산과 가라고름산에 대하여 중국인의 특수한 민족감정을 고려하여 중국영토로 주장하고 있는 근거와 동일한 것이다.

이 백두산정제비의 내용을 묵살한다면 중국이 압록강과 봉황성 사이의 서간도를 영유한것도 불법이 되는 것이니까 중국은 한중간에 서간도마저 새로운 영토분쟁의 대상지로 만드는 것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상에서 논증한 바 대로 백두산을 중국에 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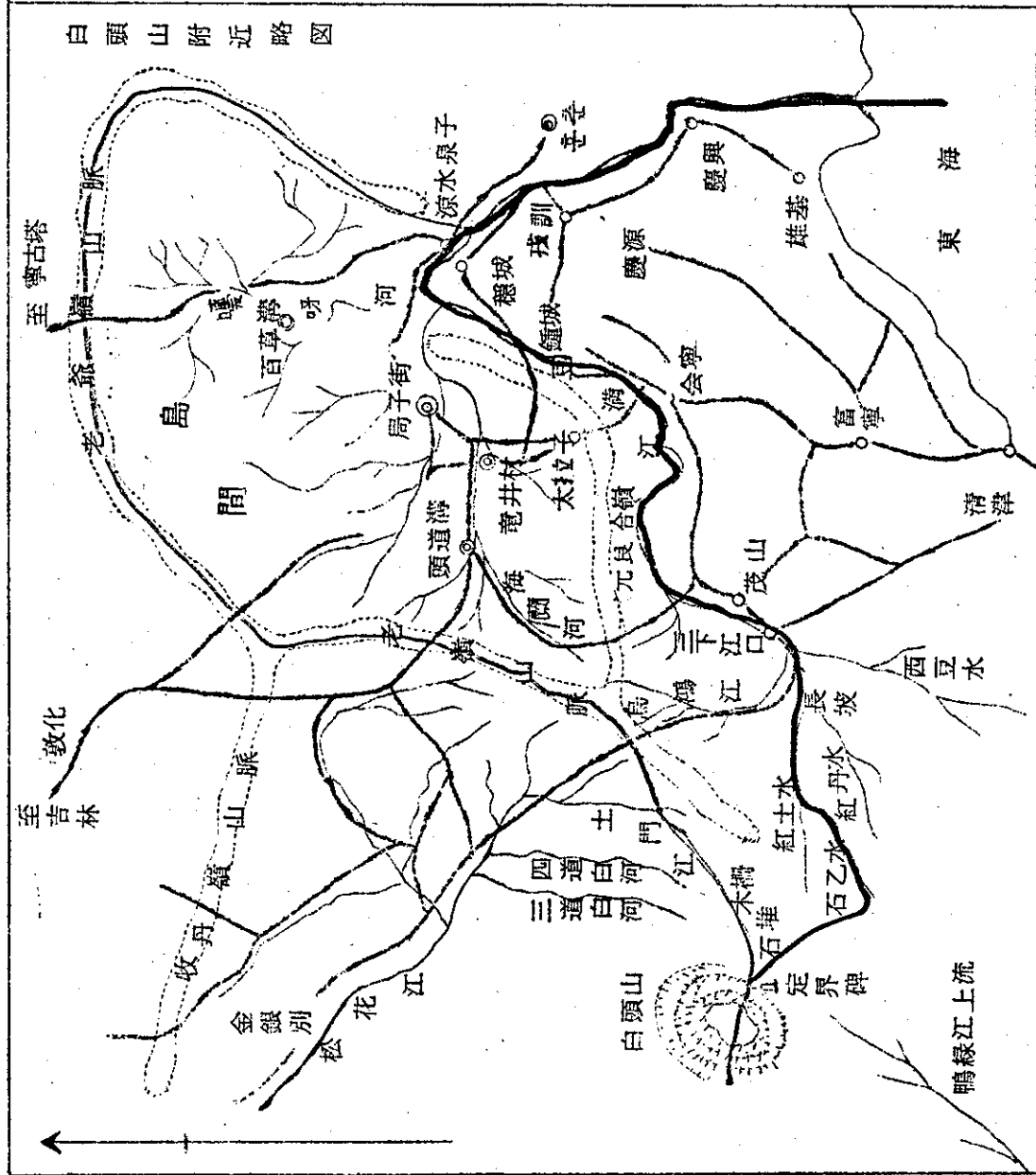
---

(92) 외문출판사 편 중인 경제문제 1963, P. 15

알길 수 없는 동시에 간도도 다시 찾기 위한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







圖例  
 一 간도지방선  
 一 두만강선



